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18.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3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1.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 13
 - 1-1.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적절한 집행 필요 17
 - 1-2.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선정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0
2.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4
 - 2-1.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 25
 - 2-2.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 2-3.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제도의 문제점 31

III. 개별 사업 분석 / 34

1.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유사 사업과 차별화된 운영 필요 34
2.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의 성과 및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 필요 38
3.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42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필요 44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 사업 성과제고 필요	47
6.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 운영방식 개선 필요	50
7.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재정편입 필요	54
8.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의 성과제고 필요 등	58
9.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3
10.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66
11.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초과승인	68
12.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연수 운영방식 개선 필요	71
1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활성화 필요	74
14.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개선 필요	78
15. 방재기술평가 위탁사업 개선 필요	82
16.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관리 강화 필요	84
17.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사업 예비비 과다신청	87
18.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 공공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89

[인사혁신처]

I. 결산 개요 / 93

1. 현 황	93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0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1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102

- 1.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III. 개별 사업 분석 / 109

- 1. 9급 공개채용시험의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개선 필요 109
- 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113
- 3. 퇴직준비교육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117
- 4.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개선 필요 등 120
- 5.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128

[경찰청]

I. 결산 개요 / 135

- 1. 현 황 135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1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3

II. 주요 현안 분석 / 144

- 1. 경찰청 인력 운용의 문제점 144
 - 1-1. 경찰청 본청 내 직제 외 인력운영 최소화 필요 145
 - 1-2. 경찰대학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전용 집행 147
- 2. 생활안전활동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 150
 - 2-1.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내실화 필요 151
 - 2-2. 계획에 없던 보호용 헬멧의 추가 구매 부적절 152



3. 경찰병원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	155
3-1.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 과다 편성	155
3-2.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미흡	157

Ⅲ. 개별 사업 분석 / 159

1. 대테러 상황관리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실효성 확보 필요	159
2. 장비관리 유지 사업의 이월 과다	163
3.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	166
4. 성폭력 신상정보의 송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169
5. 헬기 정비대금 지급 방식 개선 필요	171
6. 신임 순경교육 사업의 예비비 과다 편성	174
7. 경찰청의 적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한 미수채권의 실질가치 반영 필요	177
8. 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분석	179
8-1.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필요	179
8-2. 순천교육장의 매각 지연 부적정	183
8-3. 임차보증금 자체 수입 편성 필요	1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결산 개요 / 191

- 1. 현 황 191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5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6

II. 주요 현안 분석 / 197

- 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97
 - 1-1. 예비비 배정 전 해당 비목 예산의 타 비목 세목조정 198
 - 1-2.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200
- 2.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203

III. 개별 사업 분석 / 208

- 1. 위탁선거관리 사업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208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211
- 3.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213



[소방청]

I. 결산 개요 / 219

1. 현 황	219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4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5

II. 개별 사업 분석 / 226

1.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비비 이월 과다	226
2. 소방보조인력 복무점검 관리강화 필요	229
3. 중앙소방학교 공공요금 및 제세 적정수준 편성 필요	231
4.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전문의료인력 충원 필요	235
5. 119특수구조대 신축청사 사업관리 강화 필요	238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검사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와 현금성 금융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	242
6-1. 인증·검사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와 현금성 금융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44
6-2. 효과적인 홍보비 집행 필요	247



행정안전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5,500만원(1.8%)이 감소한 53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200만원(0.1%)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53,665	54,548	54,548	53,593	△955	△72

자료: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71억 7,900만원(0.1%)이 감소한 45조 1,38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3,522억 1,200만원(10.7%)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40,786,452	43,436,089	45,165,793	45,138,664	△27,179	4,352,212

자료: 행정안전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45억 4,800만원이며, 582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2%인 535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46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은 없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3,048	53,048	53,048	57,197	52,804	4,394	0	99.5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012	789	223	0	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00	1,500	1,500	0	0	0	0	0.0
합계	54,548	54,548	54,548	58,209	53,593	4,617	0	98.2

자료: 행정안전부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조 2,542억 2,6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45조 1,386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94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888,560	44,618,264	44,696,787	44,581,292	16,135	99,360	99.7
지역발전특별회계	547,529	547,529	557,440	557,372	0	68	100
합계	43,436,089	45,165,793	45,254,226	45,138,664	16,135	99,427	99.7

자료: 행정안전부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산은 9조 1,433억 5,700만원, 부채는 271억 4,8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1,162억 900만원이다.

자산은 조직개편일 대비 139억 500만원(0.2%)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13억 8,300만원, 일반유형자산 9조 305억 100만원, 무형자산 954억 4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60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의 증가는 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관련 선급금 등 유동자산 565억 9,400만원 감소, 토지 및 건축물 추가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42억 3,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조직개편일 대비 31억 5,100만원(13.1%)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40억 1,300만원, 장기차입부채 97억 500만원, 장기충당부채 19억 5,000만원 및 기타비유동부채 14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의 증가는 주로 선수수익 및 기타예치금 증가 등 유동부채 10억 1,000만원 증가, 금융리스계약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1억 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조직개편일*	조직개편일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9,143,357	9,129,452	13,905	0.2
Ⅰ. 유동자산	11,383	67,977	△56,594	△83.3
Ⅱ. 일반유형자산	9,030,501	8,966,263	64,238	0.7
Ⅲ. 무형자산	95,404	87,785	7,619	8.7
Ⅳ. 기타비유동자산	6,068	7,427	△1,359	△18.3
부 채	27,148	23,997	3,151	13.1
Ⅰ. 유동부채	14,013	13,003	1,010	7.8
Ⅱ. 장기차입부채	9,705	7,601	2,104	27.7
Ⅲ. 장기충당부채	1,950	1,536	414	27.0
Ⅳ. 기타비유동부채	1,481	1,857	△376	△20.2
순 자 산	9,116,209	9,105,455	10,754	0.1
Ⅰ. 기본순자산	4,043,692	4,043,69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31,668	2,021,164	10,504	0.5
Ⅲ. 순자산 조정	3,040,849	3,040,599	250	0.0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9조 3,796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9조 2,429억원 2,600만원, 관리운영비 1,499억 6,700만원, 비배분비용 5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억 6,000만원, 비배분수익 154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으로 19조 3,796억 3,200만원이다.

총 2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프로그램(18조 1,864억 4,500만원)과 재난관리프로그램(4,398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52억 4,700만원과 경비 547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소송충당부채전입액 6억 1,600만원과 정부외자산기부, 종료된 프로그램관련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46억 3,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9,239,86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9,242,926
나. 프로그램 수익	3,060
II. 관리운영비	149,967
III. 비배분비용	5,250
IV. 비배분수익	15,45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9,379,632
VI. 비교환수익 등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9,379,632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9조 1,054억 5,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조 1,162억 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7억 5,400만원(0.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9조 3,796억 3,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2억 5,000만원 발생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9조 3,901억 3,6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19조 4,157억 3,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55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I. 기초순자산	9,105,455
II. 재정운영결과	19,379,63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9,390,136
IV. 조정항목	25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9,116,209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내부거래 및 자원 이전은 없다.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528	445,813	8	5,574	0	0

주: 총계 결산 기준(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지출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③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이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은 사업성과 미흡, 집행률 저조 등으로 18억 7,500만원이 감액(66억 6,400만원→47억 8,900만원)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집행상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개선이 미흡하여 17억원이 감액(87억 6,200만원→70억 6,200만원)되었다.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은 공공 I-pin, My-pin 사업에 대해 효용성 문제와 이용률 하락 등으로 운영비 2억원이 감액(77억 9,100만원→75억 9,1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②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계획 대비 53%만 시행되어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와 급경사 등 위험구조 개선을 위하여 150억원이 증액(150억원→300억원)되었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하여 125억원이 증액(130억원→255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민운동 3단체(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원 사업이

1) 안전행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안전행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LED 사업(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사업)이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⁴⁾

3)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7.

행정안전부는 ① 정부혁신 확산과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한 열린혁신 선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④ 정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의 신뢰 제고, ⑤ 국민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⑥ 재난대응·안전역량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관리비 집행률 부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사업관리비 집행률이 67.4%로 부진하였으며, 일부 사업관리비는 사업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자정부 전반의 홍보 예산 등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위치기반의 해양재해 예방 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 사업과 국가융합망 기반구축 사업은 심의과정을 거쳐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각각 관련 기술 미비 및 사업비 증가라는 사유로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가 불용되었는 바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부세의 배분 및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세 배분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촉진·유도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교부세 교부 시기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와 실제 교부 시기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으로 추진한 ‘지방재정 혁신 우수’와 ‘재정분석 우수’ 평가는 세입·세출 효율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유사하여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3회 유찰되어,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과정

에서 사업이 6개월 지연되고, 대규모 불용(2017년 예산액 1,070억 8,800만원 중 6.2%인 66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호우 및 지진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이·전용 및 불용⁵⁾)이 발생하였다.

5) 2017년 예산현액 기준 집행율은 예산현액 629억 1,400만원의 중 10.5%인 66억 1000만원이 집행

II

주요 현안 분석

1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

전자정부지원 사업¹⁾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부처 간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1,263억 2,400만원 중 97.4%인 1,23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정부지원	126,324	126,324	0	0	126,324	123,086	0	3,238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²⁾에 따라 다수 부처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2031-500

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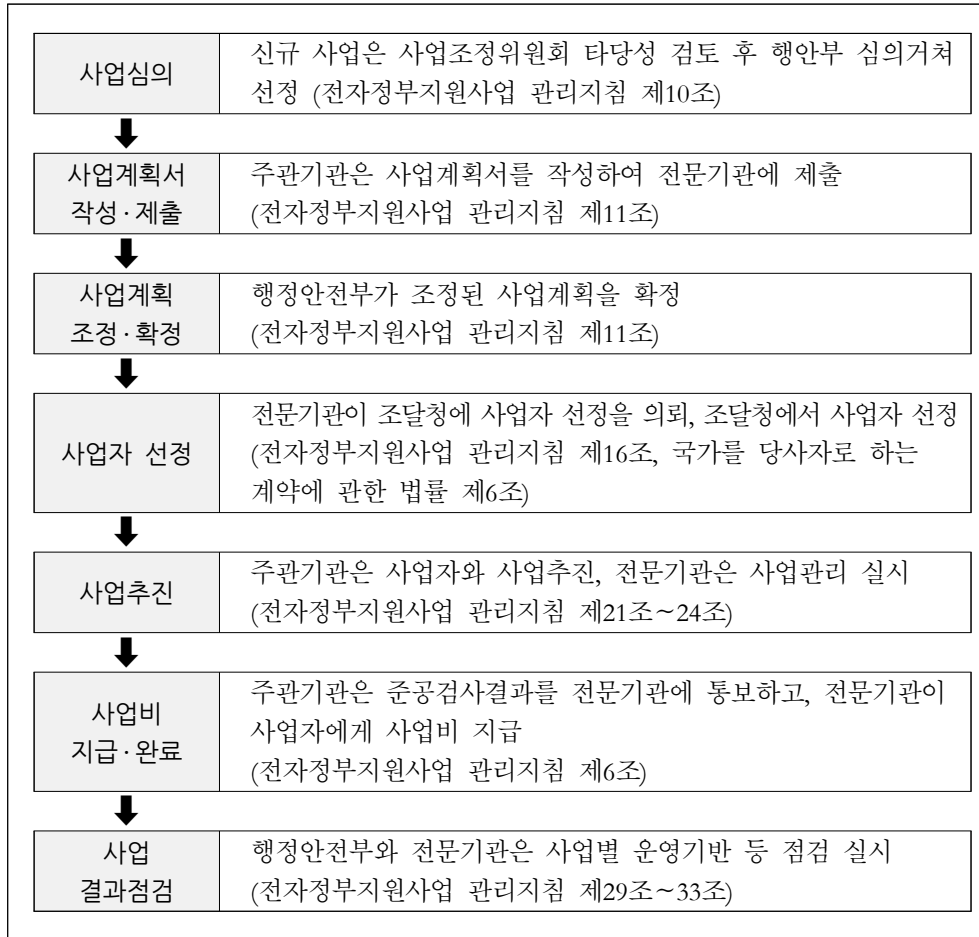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동 사업의 출연기관인 전문기관은 과제제안서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각 중앙행정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면 전문기관에 두는 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는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전문기관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달발주를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은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은 사업별 성과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4개 분야, 35개 과제(3개 과제는 잔액사업으로 추진)를 지원하였다. ① 맞춤형 서비스 분야는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 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등 7개 과제이며, 집행액은 238억 2,000만원이다. ② 안전한 사회 분야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8개 과제이며, 집행액은 386억 3,700만원이다. ③ 유능한 정부 분야는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이며, 집행액은 221억 900만원이다. ④ 범정부 인프라 분야는 정부 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 등 10개 과제이며, 집행액은 207억 9,500만원이다.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집행액
맞춤형 서비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법원/국토부	7,611	6,635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행안부	5,000	4,663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공정위	5,300	4,651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보훈처	4,127	3,807
	문화정보 중심의 다 부처 연계시스템 ISP	문체부	500	467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포털시스템 구축	공정위	3,000	2,919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ISP 수립	외교부	831	678
안전한 사회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긴급)	행안부	9,848	7,107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비긴급)	권익위		2,490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행안부	4,628	4,174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7,814	7,536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행안부 등	7,730	7,117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산림청	4,850	4,421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3단계 구축	해수부	3,410	3,307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구축	환경부	3,750	2,485
유능한 정부	위기기반의 해양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	해수부	2,726	0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금융위	4,500	3,610
	정부조직·경원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1,106	999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조달청	2,000	1,675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국토부	1,472	1,503
	부패방지정보시스템 ISP	권익위	500	456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법무부	10,536	13,866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	4,169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안부	2,314	2,286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온나라)	행안부	9,182	1,388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기록관리)	행안부		3,207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행안부	6,743	6,109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행안부	1,500	1,09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행안부	1,044	1,022
	전자정부 해외진출지원사업	행안부	1,000	972
	국가 마스터데이터 식별 및 관리	행안부	2,067	1,903
	국가융합망 기반 구축	행안부	4,000	0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교육부	2,148	1,962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918	856
기타 (잔액 사업)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대비실	0	2,905
	온실가스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국조실	0	623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0	749

자료: 행정안전부

1-1.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 필요

가. 현 황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직접사업비 이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자정부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중 관리비로 배정된 예산액 42억 3,300만원 중 67.4%인 2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및 직접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항목	예산(배정)액 (A)	집행액 (B)	잔액	집행률 (B/A)
직접경비 (관리비)	소계	4,233	2,855	1,378	67.4
	사업운영비	2,222	1,304	918	58.7
	교육비	75	18	57	24.0
	용역비	1,192	975	217	81.8
	비정규직보수	744	558	186	75.0
직접사업비		122,091	106,783	12,070	87.5
합계		126,324	109,638	13,448	86.8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사업운영비와 교육비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배정액		3,580	4,463	4,858	4,233
집 행 액	소계	3,154	4,095	3,745	2,855
	사업운영비	1,384	1,925	1,770	1,304
	교육비	60	36	22	18
	용역비	1,064	1,318	1,257	975
	비정규직보수	646	816	696	558
잔액		426	368	1,113	1,378
집행률		88.1%	91.8%	77.1%	67.4%

자료: 행정안전부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 집행율이 201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고, 2017년의 경우 68% 수준이다. 사업운영비는 배정액 22억 2,200만원 중 58.7%인 1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비는 배정액 7,500만원 중 24.0%인 1,800만원을 지출하여 두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운영비의 경우 2017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시 벤치마킹테스트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소요비용을 책정하였으나, 건당 2,000 ~ 3,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벤치마킹테스트의 수요가 예상수요(예상수요 30건, 실제집행 5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였고, 교육비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본사)·제주(글로벌협력단) 혁신도시로 2015년 9월 이전 이후 교육 프로그램 등 제반환경이 미비하여 교육비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경우 예산계상 단계에서 수요예측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행부진이 나타난 측면이 있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이전 이후 다음연도가 아닌 2017년에 교육 프로그램 등 제반환경 미비로 교육비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교육관련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설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

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관리비의 집행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용역비 중 일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에 집행되었다.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용역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정부 사업관리로 4억 500만원, 정책연구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중 용역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집행액
전자정부 사업관리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302
	전자정부지원 사업 이용자만족도 조사	37
	전자정부지원 사업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64
정책연구 및 홍보	전자정부 50년사 편찬	322
	전자정부 50년사 사이버 홍보관 구축	49
	전자정부지원 사업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연구	58
	지능형 전자정부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78
	2018 전자정부 기술트렌드 조사	22
	전자정부 이슈매거진 'D.gov' 제작 및 배포	43
합계		975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전자정부지원 사업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연구³⁾’, ‘지능형 전자정부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⁴⁾’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거시적인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책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정부 50년사 편찬’, ‘전자정부 50년사 사이버 홍보관 구축’ 용역은 전자정부 전반에 관한 홍보 용역이고, 행정안전부는 다

3) 계약업체: 주식회사 베리타노스, 용역기간 : 2017. 9. 8. ~ 12. 31.

4) 계약업체: (주)모스트씨엔씨, 용역기간 : 2017. 9. 8. ~ 12. 31.

른 사업인 대한민국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⁵⁾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행사 및 행사 홍보비로 집행⁶⁾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역을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용역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1-2.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선정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제안 혹은 수요를 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두는 전자정부사업심의위원회⁷⁾에서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으로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상사업을 심의할 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제1항⁸⁾에 따라 ① 전자정부 정책 부합성, ②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5) 코드명: 일반회계 2034-503

6)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예산액	집행액
기념식 장소 임차	55	60
기념식 행사 운영비	65	56
연계행사 지원비	5	4
대외 홍보비	20	17
시설장비 등	55	52
계	200	189

자료: 행정안전부

7)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 스마스서비스과장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7명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

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④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①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②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③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취소⁹⁾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일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는 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면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위치기반의 해양재해 예방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 및 국가융합망 기반구축 사업을 선정하였지만 주관기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위치기반의 해양재해 예방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은 예산액 27억 2,600만원의 사업으로 갯골, 이안류, 밀물 등 해양사고 위험을 미리 탐지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등 해양재해와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위험알람, 경보를 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조난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인명구조 성공률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해양재해 예방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사업은 부처 자체 ISP¹⁰⁾와 전자정

9)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사업의 취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10) 해양안전지도 구축과 해양정보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축 관련 ISP를 각각 ‘해양안전지도 로드맵 ISP’와 ‘해양정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및 발전전략 ISP’로 나누어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

· 해양안전지도 로드맵 ISP - 계약업체: (주) 올포랜드 컨소시엄, 용역기간: 2014. 5. 26. ~ 12. 17, 용역비용: 2억 7,023만원

부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전국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성숙되지 않아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양수산부는 향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은 예산액 40억원의 사업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통신료 절감,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능화된 보안관제 및 과학적인 장애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사업이다.

취소 사유를 보면 국가융합망 기반구축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의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사업군의 심층평가에 따라 제시한 정책으로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년간 34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런데,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 이후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한 ISP에서 국가융합망의 기술적 실현을 위해 장비들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구축비가 5년간 72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¹¹⁾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사업취소를 신청하였다.

· 해양정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및 발전전략 ISP - 계약업체: (주) 지오스토리 컨소시엄,
용역기간: 2015. 7. 7. ~ 12. 20, 용역비용: 8,605만원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2017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취소 현황]

과제명	주관 기관	예산 (백만원)	취소사유
위치기반 해양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726	- 당초 사업목표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안전정보시스템 및 웨어러블 서비스 구축 등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제1항 제2호(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
국가융합망 기반구축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4,000	- ISP결과 총사업비 현실화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7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불가

자료: 행정안전부

해양재해 예방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사업은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 이전에 실시한 ISP가 면밀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시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해양재해 예방위한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사업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ISP에 대한 사후 검토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시 사업비 규모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되어 해당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2017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시책, 재난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¹⁾²⁾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과 같이 정산 및 반납절차가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의 2017년 집행액은 총 42조 4,273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2017년 집행액은 39조 2,226억원이다. 특별교부세 중 ①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2017년 집행액은 4,852억원이고, ② 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2017년 집행액은 1,213억원이며, ③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재난복구 등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2017년 집행액이 6,065억원이다. 그밖에 부동산교부세의 2017년 집행액은 1조 5,328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의 2017년 집행액은 4,588억원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40%)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50%)로 구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다.

2) 2018년부터 특별교부세 중 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7년 지방교부세 종류별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집행액	
보통교부세	37,577,539	1,645,089	39,222,628	42,469,616
특별교부세	1,162,192	50,878	1,213,070	1,313,493
- 지역현안	464,877	20,351	485,228	525,397
- 국가시책	116,219	5,088	121,307	131,349
- 재난안전관리	581,096	25,439	606,535	656,747
부동산교부세	1,532,835	0	1,532,835	1,780,100
소방안전교부세	458,815	0	458,815	417,260
총계	40,731,381	1,695,967	42,427,348	45,980,469

자료: 행정안전부

2-1.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

가. 현황

보통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³⁾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 수입자체노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기초수입액은 보통세 9개 세목 수입액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소득세 6개 세목은 과거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을 기초로 산정하고, 레저세와 자동차세는 연평균 증가율, 지방소비세는 배분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보정수입액은 경상세외수입, 시·도세 징수교부금,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중 경상세

3)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외수입⁴⁾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을 기초로 추계하여 산정하고 있다. 징수교부금,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재정특례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해당연도의 시·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자체노력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등 7개 항목의 수입자체노력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충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요소이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노력 항목을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기초수입액의 세목별 산정방식을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 추세와 해당연도 배분 예정금액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정수입액 또한 경상세외수입은 과거 3년 평균 징수액, 징수교부금 및 시·도 일반조정교부금 등은 시·도세 추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세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는 감소하게 되는 구조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은 산정된 결과의 80%만을 반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자체노력을 7개 항목(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에 따라 보완적으로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하여 보통교부세를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수입 관련 자체노력 반영 효과를 보면 1조원 이상 기준재정수입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4)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5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감면액 축소⁵⁾ 항목은 인센티브 금액이 패널티 금액에 비해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술한 세가지 항목과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항목은 최근 3년간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가 10개 내외로 나타나 수입 관련 자체노력 항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유인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최근 3년간 수입자체노력 항목별 기준재정수입액 조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인센티브 (A)	패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패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패널티 (B)	순효과 (A-B)
지방세 징수율 제고	4,093	652	3,441	2,308	1,596	712	2,700	832	1,868
지방세 체납액 축소	6	16,554	△16,548	32	19,130	△19,098	285	13,788	△13,503
경상세외수입 확충	2,731	203	2,528	3,335	180	3,155	3,604	95	3,50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4	4,611	△3,837	345	4,504	△4,159	1,410	3,260	△1,850
탄력세율 적용	19	2,041	△2,022	16	1,494	△1,478	22	610	△588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586	△586	0	619	△619	0	504	△504
적극적세원 발굴 및 관리	0	0	0	0	0	0	0	0	0
수입자체노력 총액	7,623	24,647	△17,024	6,036	27,523	△21,487	8,021	19,089	△11,068

자료: 행정안전부

5)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은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과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제도가 인센티브 없이 패널티만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수입자체노력 항목별 지자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포]

(단위: 개)

구 분	2016		2017		2018	
	인센티브	페널티	인센티브	페널티	인센티브	페널티
지방세 징수율 제고	98	75	65	108	123	4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	171	2	171	12	161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147	26	147	26	158	1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9	144	37	136	50	123
탄력세율 적용	3	161	4	122	4	25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161	0	59	0	55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0	0	0	0	0	0

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 지자체는 173개(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57개)이고 일부 항목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모두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결과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초수입액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중인 수입자체노력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한 유인체계로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으로 수입자체노력 항목의 개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2-2.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현 황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재정운용 수입인 교부세가 해당 연도 중 이른 시기에 교부되어야 재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지방교부세법」 제10조⑥에 따라 분기마다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정기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분석의견

교부세의 교부시기가 법률에서 정해진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분기마다 교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교부시기를 분기별로 하면 분기의 초에 교부하는 것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에 연동되어 확정되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 되고, 분기의 말에 교부하게 되면 교부시기가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월별로 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세수가 확보되면 12월에 교부세를 교부하고, 전전년도 결산정산분과 5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액을 연초에 교부하고 있다.

6) 「지방교부세법」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1월	당초	1. 20.	43,621	6월	당초	6. 23.	36,000
2월	당초	2. 21.	42,128	8월	당초	8. 2.	31,030
3월	당초	3. 21.	37,878		추경	8. 10.	16,451
		3. 23.	3,600		당초	8. 25.	19,549
4월	당초	4. 27.	31,828	9월	당초	9. 25.	28,000
5월	당초	5. 26.	35,965	10월	당초	10. 27.	66,176
합 계		392,226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 부동산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2월	당초 (2015년 경산분)	2. 27.	1,179
4월	당초	4. 27.	3,867
12월	당초	12. 28.	10,282
합 계			15,328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1분기	당초	1. 19.	1,147
2분기	당초	4. 17.	1,147
3분기	당초	9. 27.	1,147
4분기	당초	11. 7.	1,147
합 계			4,58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법률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교부시기를 월별 또는 특정시기로 하기 보다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제도의 문제점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결과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다지출이나 수입징수 태만이 지적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교부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미감액 지자체에 대한 재원보전과 건전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는 2015년 303억원, 2016년 382억원, 2017년 489억원, 2018년 308억원으로 201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8년에는 그 규모가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총 489억원의 감액제원 중 214억원을 건전 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76억원은 미감액 지자체에 재원보전을 위해 교부하였다.

7)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	13,300	21,350	15,385
재정보전	24,894	27,557	15,498
계	38,194	48,907	30,883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지차제 지급액	지자체 수
지방재정혁신 우수	10,400	44
공기업혁신 우수	6,150	73
재정분석 우수	4,800	26
합계	21,350	143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으로 2017년 추진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와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평가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로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에 104억원, ‘재정분석 우수’에 4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 인센티브의 분야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재정개혁 사례에 대한 평가와 재정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라는 점이 다를 뿐 세입효율과 세출효율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은 유사하고, 형식면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을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평가지표와 형식면에서 유사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와 재정분석 우수의 분야 및 평가항목 비교]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재정분석 우수	
분야	세부평가항목	분야	세부평가항목
세출절감	세출 절감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	건전성	수지관리 3개 지표, 채무(부채)관리 4개 지표 등
세입증대	세입 증대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	효율성	세입효율 6개 지표, 세출효율 6개 지표
기타	지자체간 협업 우수사례 등	책임성	재정법령준수 등 3개 지표

자료: 행정안전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유사 사업과 차별화된 운영 필요

가. 현 황

생활공감정책추진¹⁾ 사업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5억 2,600만원 중 92.2%인 4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국민아이디어 제안과제 발굴 및 실행관리 강화에 2,200만원,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2억 2,200만원,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활동 1억 2,300만원, 생활공감 홈페이지 운영 1억 1,8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활공감정책추진	526	526	0	0	526	485	0	41
국민아이디어 제안과제 발굴 및 실행관리 강화	25	25	0	0	25	22	0	3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248	248	0	0	248	222	0	26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활동	123	123	0	0	123	123	0	0
생활공감 홈페이지 운영	130	130	0	0	130	118	0	12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246-300

동 사업은 4,000여명 내외 규모의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이들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2009년도부터 위촉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인원은 1기(2009년) 3,041명, 2기(2010년) 10,258명, 3기(2011년) 10,036명, 4기(2013년) 5,084명, 5기(2015~2016년) 3,888명, 6기(2017년) 3,858명이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위촉방식은 공개모집(70%), 기초 지자체 자체 선발(20%),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전문직 선발을 위해 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추천(10%)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성별, 연령, 전문성 및 다문화가정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지만 연례적으로 여성 단원(74.4%)과 40대 이상 단원(85.9%)이 많은데 이는 3기까지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아닌 주부모니터단으로 운영하여 계속 참여자 중 여성과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생활공감모니터단원의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합 계	성별		연령별 ¹⁾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858	987 (25.6%)	2,871 (74.4%)	203 (5.3%)	340 (8.8%)	1,028 (26.7%)	1,434 (37.1%)	853 (22.1%)

주: 1) 연령대가 10대인 생활공감모니터단원 6명
자료: 행정안전부

모니터단이 온라인 사이트(www.happylife.go.kr)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 아이디어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에 포함되어 각 행정기관이 심사,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모니터단원의 지역별 모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지자체경상보조 방식으로 1인당 3만 2,000원 가량이 지원된다.

[생활공감모니터단원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내용	지원단원 선정방식	지원단원 수	1인당 비용
우수제안 포상금	내·외부심사를 통하여 수상과제 및 훈격 결정	10명	- 평균 80만원 (대통령상 200만원, 총리상 100만원, 장관상 50만원)
우수제안 인센티브	분기별 1회 이상 제안채택자	578명	- 평균 5.8만원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 제안채택자 3만원)
지자체 경상보조	시도별 모니터단원 수로 안배	3,858명	- 1인당 평균 3.2만원 (총 교부액 1억 2,3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 835명의 모니터단원이 총 12,022건을 제안하여 이중 1,183건(채택률은 9.8%)이 채택되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 정책제안 및 채택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안자수	1,009	600	911	629	835
제안건수	11,553	16,065	15,008	11,581	12,022
채택건수 (채택률)	304 (2.6%)	792 (4.9%)	1,203 (8.0%)	1,577 (13.6%)	1,183 (9.8%)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통한 정책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각 기관별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 제도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국민참여를 통해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일반 국민도 제안이 가능한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되고 있고, 각 제도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한 포상을 위한 행사도 중앙우수제안 행사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생활공감정책 제안은 그 목적과 기능 및 절차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와 생활공감정책 제안제도의 비교]

구분	국민신문고(국민제안)	생활공감정책 제안(생활공감 모니터단)
주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예산 (2017년)	16억 7,800만원 ¹⁾	5억 2,600만원
법령상 근거	「국민제안규정」 제1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2
제안 심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각 행정기관이 심사, 채택여부 결정,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제출, 행정안전부는 중앙우수제안 심사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제안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
포상	중앙우수제안에 대해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각기 포상 및 부상 지급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포상 및 부상 지급 (중앙우수제안 행사를 통해 수행)

주: 1)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소통시스템 관리 사업의 예산기준이며 해당 예산은 국민제안을 포함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관리예산이다.

자료: 행정안전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2) 우수제안의 포상 및 부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우수제안’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가. 현 황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¹⁾은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온-나라 지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온-나라 정책연구)의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5억 9,900만원 중 83.5%인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유지보수 3억 5,300만원, ‘지식행정활성화, 정책연구용역관리’에 1억 4,7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599	599	0	0	599	500	0	99
GKMC, PRISM 유지보수	449	449	0	0	449	353	0	96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용역관리	150	150	0	0	150	147	0	3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933-304

나. 분석의견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의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인 ‘온-나라 지식’은 행정기관 단위로 분산된 업무·정책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지식관리시스템이다. 2008년 기관 단위로 관리하던 업무지식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개발된 후 2016년 초 행정망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개발하였다.

동 시스템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용자가 등록한 지식과 온나라 문서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되는 지식을 합하여 총 2,662,840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누적 조회건수는 8,930,617건이다.

그런데 전체 누적 지식에 대한 누적 조회 건수를 2017년말 기준으로 추산하면 3.4건으로 높지 않은 수준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활용현황]

(단위: 건)

연도	연도별 건수		누적 건수 ¹⁾	
	지식 등록	지식 조회	지식 등록	지식 조회
2013년	404,853	901,655	741,222	2,576,703
2014년	208,559	653,127	949,781	3,229,830
2015년	508,272	2,237,023	1,458,053	3,477,172
2016년	371,711	964,622	1,829,764	6,431,475
2017년	833,076	2,499,142	2,662,840	8,930,617

주: 1) 2008년부터 각 기준연도까지의 누적 건수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동 사업은 사용자 등록지식건 수, 일일 접속자 수, 지식 조회 건 수,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이 있음에도 예산 성과지표 역시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식의 생산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사용자 등록 지식 건수를 온-나라 문서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되는 지식과 구별하여 별도의 통계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나라 지식 사업의 등록지식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 지식 건수를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등록되는 지식 건수와 별도의 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성과지표를 운용하여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통하여 중앙부처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Management)인 ‘온-나라 정책연구’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온-나라 정책연구용역의 각 연도별 수행과제는 매년 20% 이상의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선정되고 있고, 2013년 수행 과제의 경우 15.2%가 2017년 9월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온-나라 정책연구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조회 수가 2015년 이후로는 하락추세²⁾이다.

[온-나라정책연구(프리즘) 정책연구 비공개율]

(단위: %)

조사시점 연구수행연도	2014년 5월	2015년 6월	2016년 5월	2017년 9월
2013년 수행 과제	33.4	18.8	16.2	15.2
2014년 수행 과제	-	22.9	18.9	15.4
2015년 수행 과제	-	-	21.0	18.4
2016년 수행 과제	-	-	-	22.3

자료: 행정안전부

2) 2015년: 20,481,819 → 2016년: 18,985,305 → 2017년: 16,912,186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현행 법령³⁾상 정책연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2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각 기관이 주기적으로 비공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는 공개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공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연구용역이 계속적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2년을 도과한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를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에게 주기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보 및 수사 등을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④ 재판·수사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⑥ 성명·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⑦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가. 현 황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사업은 공무원들이 민간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메신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7억 3,000만원 전액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집행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바로톡 S/W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해 6억 9,6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전자정부구축	2,148	2,148	0	0	2,148	2,148	0	0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730	730	0	0	730	73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사업의 출연기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예산액	집행액
모바일 행정서비스 운용 및 효율화	바로톡 S/W확충, 바로톡 기능개선 등	730	696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2035-511

나. 분석의견

바로톡은 공무원의 활용율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톡의 다운로드 수를 보면 2015년 하반기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말에 148,259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했는데 2017년 말에 151,737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여 가입자 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며 사용대상 공무원 약 45만명 중 37.9%만이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바로톡의 이용건수를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건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바로톡의 경우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추가 구동으로 인해 민간메신저보다 구동시간 및 메시지 전송시간이 느린 단점이 있어 가입자 가운데 업무용으로 바로톡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톡 사용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바로톡 가입자 수	13,659	148,259	151,737
바로톡 이용건수	-	22,171,413	16,517,039

주: 바로톡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이며 바로톡 이용건수는 12월 한달 기준 이용건수로 2015년은 관련통계가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바로톡의 경우 민간메신저를 통한 가상화폐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바로톡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2018년에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2018년 2월 기준 206,501명)이고 업무관련 지시 및 보고서 전송 시 바로톡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어서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편의개선이 아닌 정부의 사이버보안 실천방안 또는 강제적인 의무사용에 따라 늘어난 가입자의 경우 장기적인 주기적 활용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편의개선 등을 통해 바로톡의 활용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¹⁾ 사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등록센터와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18억 2,200만원 중 99.1%인 1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1,822	1,822	0	0	1,822	1,805	0	17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시스템 운용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서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절차가 없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과 달리 위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137-500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대리발급 불가	○ 본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공인인증서 등
제출 방법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증
확인 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인감증명서의 대체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이 인감증명서에 비해 낮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최근 5년간 발급실적을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가 2016년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건수도 2017년 기준으로 5.8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2016년보다 발급실적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연도	합계(A)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합계(B)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률 (B/A, %)
2013년	40,821,390	39,812,281	1,009,109	1,008,603	506	2.47
2014년	41,767,960	40,519,945	1,248,015	1,245,049	2,966	2.99
2015년	44,622,591	43,198,707	1,423,884	1,421,643	2,241	3.19
2016년	43,056,966	40,761,931	2,295,035	2,292,047	2,988	5.33
2017년	40,968,828	38,558,915	2,409,913	2,407,484	2,429	5.8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인감증명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등기소·금융기관 등 본인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 간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실적이 낮다는 설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비용이 2017년 기준으로 각각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발급실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도별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정보시스템 운용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인감시스템	본인서명시스템
2013년	154	87
2014년	159	267
2015년	133	222
2016년	133	123
2017년	133	123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 황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¹⁾ 사업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20억 9,700만원 중 83.8%인 1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1999년 출범하였고, 2003년부터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총괄기능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사무 심의 등을 수행하여 병행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는 두 위원회를 병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운영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경찰실무추진 사무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되었다. 2018년 3월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운영	2,097	2,097	0	0	2,097	1,758	0	339
위원회 회의 운영	600	600	0	0	600	358	0	242
지방자치발전 방안 연구	80	80	0	0	80	70	0	10
국민소통 및 공감대 형성	333	333	0	0	333	321	0	12
위원회 기본 운영	1084	1084	0	0	1084	1,009	0	75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1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의결한 사무의 지방이양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사무를 의결하고, 해당 이양사무가 이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이양 완료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핵심업무로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을 정책과제로 삼고 2013년 9월 출범한 이후 2017년까지 127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이양 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 출범 이전(2012년도 이전)까지 이양대상으로 확정된 사무 206건이 이양완료 되었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양 대상으로 의결한 사무 127건은 이양실적이 없고, 위원회 의결 이후에 정부에서 이양확정 사무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이양 사무를 의결하고 그 의결사무가 이양이 완료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채택한 만큼, 자치분권위원회(舊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의결한 사무가 실제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지방이양 의결 사무의 지방이양 실적]

(단위: 건, %)

기간 (연도)	이양결정 사무 수 (건, %)	국가사무 이양완료 사무 수(건)					미이양 사무 수 (건)
		소계	2000- 2002	2003- 2007	2008- 2012	2013- 2017	
합계	3,101 (100%)	2,188 (70.6%)	232	987	763	206	913 (29.4%)
2000-2002	612 (100%)	611 (99.9%)	232	374	4	1	1 (0.1%)
2003-2007	902 (100%)	875 (97.0%)	-	613	243	19	27 (3.0%)
2008-2012	1,587 (100%)	702 (44.2%)	0	0	516	186	885 (55.8%)
2013-2017	127	0	0	0	0	0	0

주: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양결정 사무 수는 정부에서 이양확정 사무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계에서 제외하였고 미이양 사무 수도 0건으로 표기하였다.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 황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 등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제운영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 등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1억 7,200만원 중 91.3%인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제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441	441	0	0	441	426	0	15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등	172	172	0	0	172	157	0	15
우수기관 포상	230	230	0	0	230	230	0	0
제도운영 및 활성화	39	39	0	0	39	39	0	0

자료: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²⁾ 행정안전부는 2017년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93-301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연말 기준 51개의 기관(1개의 중앙책임행정기관(특허청)과 50개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은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등 6개 유형³⁾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실시하며, 그 결과는 같은 법 제9조⁵⁾에 따라 기관장의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⁷⁾에 따라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체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종합평가 방식은 각 책임운영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유사업평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관리용역평가를 50:50의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한다. 2013년(2012년 실적에 대한 평가)까지는 A~F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하다가, 2014년(2013년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종합평점 구간을 조정하여 S·A·B·C·D·F의 6개 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변경하였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대 25%이고 최하위 등급인 F 등급에 따른 연봉삭감 비율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사연구형기관 23개(조사 및 품질관리형 11개, 연구형 12개), 교육훈련형 5개, 문화형 7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4개, 기타 유형 3개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5)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적을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률 현황]

(단위: %)

등 급	S	A	B	C	D	F
지급률 범위	25~20	19~14	13~8	7~1	0	역인센티브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의 평가제도의 등급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6개 등급 중 최하위인 D와 F를 받은 기관은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모든 책임운영기관장이 1%~25% 수준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반면, 역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장 적은 성과연봉 인센티브를 받는 C등급을 받은 기관도 2015년을 제외하면 전체 기관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단위: 건, %)

연도	기관수	평가결과						
		등급	S	A	B	C	D	F
2014	36	기관수	10	13	11	2	0	0
		분포(%)	27.8	36.1	30.6	5.6	0.0	0.0
2015	37	기관수	7	12	13	5	0	0
		분포(%)	18.9	32.4	35.1	13.5	0.0	0.0
2016	34	기관수	7	14	11	2	0	0
		분포(%)	20.6	41.2	32.4	5.9	0.0	0.0
2017	44	기관수	8	19	14	3	0	0
		분포(%)	18.2	43.2	31.8	6.8	0.0	0.0
2018	44	기관수	10	19	13	2	0	0
		분포(%)	22.7	43.2	29.5	4.5	0.0	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정부기관의 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이 기관평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기관장의 성과를 4등급(S,A,B,C)으로 평가받는데 비해 기관단위의 종합평가를 받는 책임운영기관은 일반기관에 비해 2단계 더 낮은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책임운영기관을 평가하는 민간전문평가단에서도 성과가 일반소속기관과 유사한 기관에게 D나 F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성과연봉을 누적하여 책정하는데 반해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D등급(연봉상승률 0%)을 받은 경우 사실상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나 F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려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정부기관의 형평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법과 시행령의 취지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종합평가 제도의 하위 등급(D와 F)을 부여하지 않고 운용하는 것은 제도와 제도 운용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종합평가 제도의 등급체계 및 운영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간판문화선진화 사업은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홍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전문역량을 강화 및 옥외광고 현장실태를 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간판문화선진화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발전활성화	2,348	2,348	0	0	2,348	2,263	0	85
간판문화선진화	40	40	0	0	40	40	0	0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의 대상인 옥외광고물 중 금지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그 수익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3항²⁾ 단서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200억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3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2

[연도별 옥외광고물 수익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익금	31,211	28,444	29,525	29,008	23,150	23,199

자료: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⁴⁾된 특수법인인 한국옥외광고센터⁵⁾가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옥외광고물의 수익금은 국가재정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바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국가재정 편입 등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주요 국제행사⁶⁾ 조직위원회, 옥외광고물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 운영경비로 배분되고 있다. 배분 절차는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수익금을 납부 받아 국제행사의 주관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령⁷⁾에 따른 배분비율 대로 배분하는 방식이고 해당 배분율은 기간별로 다음 표와 같은 비율로 배분되었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5) 옥외광고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속의 별도기관

6)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배분비율			
	'12.10~'13.9	'13.10~'15.9	'15.10~'15.12	'16.1~'18.12
국제행사	65	60	52	50
지방자치단체	19.6	22.4	19.2	26
한국옥외광고센터	15.4	17.6	28.8	24

자료: 행정안전부

배분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옥외광고사업의 총 수익금은 1,645억 3,700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국제행사 지원에 1,191억 8,500만원(62.9%), 지방자치단체에 378억 5,800만원(19.9%), 한국옥외광고센터에 325억 8,700만원(17.2%)이 각각 배분되었다.

[연도별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제행사	지자체	센터
계	164,537 (100%)	119,185 (62.9%)	37,858 (19.9%)	32,587 (17.2%)
2012	31,211	21,110	5,658	4,443
2013	28,444	18,146	5,767	4,531
2014	29,525	17,715	6,598	5,212
2015	29,008	16,837	5,720	6,451
2016	23,150	11,575	6,007	5,568
2017	23,199	11,600	6,031	5,568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재정법」 제17조⁸⁾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8)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최근 5년간 회계연도 결산(2012~2016년) 중 2014년과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의 국가재정에 편입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2014년 결산의 조치결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기금으로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2016회계연도 결산의 조치결과에서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관련 국회결산심사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요약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예산 외 자금 점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옥외광고사업수익금 ,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등은 예산 외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아 예산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제도 개선	옥외광고사업수익금 및 민간단체선거위탁관리경비 등 추가적인 예산외 자금과 관련한 제도개선에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2014 회계연도 결산	옥외광고 수익금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	국가의 재정활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옥외광고 수익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16년도 중 법령 개정을 통한 옥외광고 표시기한(사업기한/'18년까지) 폐지될 경우, - 광고물정비 등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가 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예정

자료: 국회, 각 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예산외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국제행사 등에 배분된 수익금 집행과 관련된 국회 등 외부기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¹⁾은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의 예산현액 7억원 중 76.6%인 5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대국민 홍보의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별 교육 및 청년활동 컨설팅의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	700	700	0	0	700	536	0	164
대국민 홍보	300	300	0	0	300	213	0	87
지역별 교육 및 청년활동 컨설팅	400	400	0	0	400	323	0	77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뿌리단을 선정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비용과 활동비와 홍보비를 지원하였고, 10개 중점추진지자체를 선정²⁾하여 출향민이 고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등에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인 출향민 고향방문·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 비용을 지원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246-300

2) 2016년 고향희망심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청년희망뿌리단은 41명(사업계획 50명)이 청년 네트워크 활동, 제도·디자인 활동, 빈집 주거 활용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다. 출향민 고향방문·봉사 프로그램에서는 각 중점추진지자체가 3개의 영역에 261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2,376명의 출향인사가 고향을 방문하였다.

[출향민 고향방문·봉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건, 명)

고향 방문 특화 프로그램 개최 (장터, 명소탐방, 캠핑 등)		기존 지역행사시 출향인사 초청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고향봉사 프로그램 (취약계층돌봄, 환경정비 등)	
횟수	출향인사	횟수	출향인사	횟수	출향인사
69	8,822	77	15,333	115	8,221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희망뿌리단의 경우 도시청년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지역활동을 하게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해당 목표에 비해 사업성고가 부진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청년희망뿌리단원을 공모하여 신청자 서면·면접 심사를 통해 46명을 선정하였고, 5명의 중도포기하여 41명이 청년이 네트워크 활동, 제도·디자인 활동, 빈집 주거 활용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희망뿌리단은 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더불어 도시청년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지역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41명의 청년희망뿌리단원 중 10명만이 지역활동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다른 단원들은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교육, 컨설팅 및 활동비(교통비, 홍보비) 등 간접적인 지원 이외에 청년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고, 이로 인해 청년이 이주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는 청년의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년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희망뿌리단을 운영하여 지역청년공동체를 육성하는 한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³⁾과 연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중 청년희망뿌리단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전일제 근로, 창업지원,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지원유형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과 연계시 청년일자리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며 면밀한 연계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뿌리단 활동 현황]

지역		지역활동(활동인원 41명)	분야
부산	동구	천재화가 이중섭 문화마을 그리기	문화·관광
대구	-	청년활동 공간 운영 및 활성화(3명)	청년활동
인천	남구	구시가지 빈집 리모델링 및 청년매칭 사업	빈집주거
광주	남구	청년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활동
경기	수원시	지역축제 기획 및 전문가 양성	문화·관광
	부천시	지역 폐자전거 업사이클 및 소품 제작	제조·디자인
		공동주택단지 청년 모임 활성화	청년활동
	동두천시	지역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재능나눔, 네트워킹, 힐링캠프, 강연회)	청년활동
	포천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세미나, 포럼 개최)	청년활동
	연천군	지역 농산물 생산 농가협업 및 온라인 판매	농업판매

3) 코드명: 일반회계 3131-301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①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전일제)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정착지원형, ② 창업공간 또는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임대료, 교육·컨설팅 비용)를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 청년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무경험이 가능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시간제 근무(전일제도 가능)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의 세 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지역		지역활동(활동인원 41명)	분야
강원	강릉시	귀촌귀농인의 농업전업 성공 실천	농업판매
		지역의 문화·역사·유산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원주시	재개발 예정구역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전시	문화·관광
충북	충주시	대안적 삶 경험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조성	청년활동
충남	서산시	서산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활동
전북	순창군	문화콘텐츠 연계 공정여행 활성화(재즈 공연)	문화·관광
		청년 귀농귀촌 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	청년활동
전남	순천시	자동차 중고 부품 도소매, 자동차아이템 행사	제조·디자인
		지역 어르신 케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청년활동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캐릭터상품 개발	제조·디자인
	여수시	섬 빈집 숙박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
		섬마을 자원발굴 및 섬문화 아카이빙	문화·관광
		섬 주민 사진교실 및 주민사진 전시회	문화·관광
	목포시	섬 청소년·청년 교육 및 지역청년 연계·교류	청년활동
		목포 원도심 스토리텔링 및 주민이야기 아카이빙 (인터뷰, 영상제작, 이야기집)	문화·관광
		청년 요식업 마케팅 및 서비스 강화	농업판매
		청년 귀농, 공동체 육성, 농산업 청년창업 지원	청년활동
	강진군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창업 노하우 공유	청년활동
경북	포항시	지역문화 발굴, 청소년 교육 및 교류	청년활동
제주	서귀포시	제주 IT프리랜서 커뮤니티 구축 및 지역농가 연계	청년활동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대국민 홍보 예산의 경우 집행부진이 나타났고, 집행부진이 나타났음에도 청년희망뿌리단원 모집관련 신문 광고비를 다른 세부사업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고향사랑희망심기 사업의 대국민 홍보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액이 2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이 70%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원 사업⁵⁾에서 청년희망뿌리단원 모집관련 신문 광고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의 홍보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홍보 내역	집행액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	고향희망심기 및 청년희망뿌리단 홍보 및 성과 영상 과 우수사례집 제작	68,000
	고향희망심기 10개 중점지자체 홍보 리플렛 디자인 및 제작	13,000
	청년희망뿌리단 모집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9,000
	청년희망뿌리단 모집 광고	10,000
	청년희망뿌리단 우수사례 기획 홍보	35,000
	지역균형발전박람회 행안부 홍보부스 설치	58,000
	지역균형발전박람회 사회적경제관 특별부스 참여	20,000
	소계	213,000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원 사업	청년희망뿌리단 모집관련 신문 광고비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이 시행초기여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활동이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일부 홍보비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청년희망뿌리단 모집을 위한 홍보비의 경우 지역균형과 관련된 통합적인 지원 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사업에서 홍보비를 지출하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의 성과가 상반기부터 나타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특수상향지역개발,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사업인 고향희망심기 사업의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5) 코드명: 지역발전특별회계 1231-302

가. 현 황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¹⁾ 사업은 개별기관에서 운영되는 정보자원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정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의 2017년 예산액 1,070억 8,800만원 중 562억 4,500만원은 이·전용을 통해 호우 및 지진피해 재해복구비 등에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629억 1,400만원 중 10.5%인 6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3정부통합전산 센터 신축	107,088	107,088	12,071	△56,245	62,914	6,610	0	56,30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신축	101,265	101,265	10,543	△56,232	55,576	4,977	0	50,599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 구축	5,570	5,570	1,528	0	7,098	1,497	0	5,601
대구센터추진단 운영비	253	253	0	△13	240	136	0	104

자료: 행정안전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사업은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입주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통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347억원이며, 연면적 33,515㎡(10,138평)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하매립형 전산동과 지상의 행정동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2042-500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개요 〉

- 부지 : 81,456㎡(약24,640평)
- 건축 : 연면적 33,515㎡(10,138평)
 - * 대전(34,465㎡), 광주(33,562㎡)
 - ※ 전산동(지하매립형) : 22,391㎡, 행정동(지상건물) : 11,124㎡
- 초기입주 : 행정·공공기관 전산장비 9,855대 (최대 5만여대)
- 조직구성(안) : 5과, 108명 규모 (운영총괄과, 정보자원통합과, 정보시스템과, 보안통신과, 공공기관과)
 - ※ 대전: 1센터장, 1관 9과 192명, 광주: 1센터장, 4개과 92명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은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정부통합센터 신축 계획 및 향후 일정]

기 추진				향후 계획		
설계·시공일괄방식 입찰공고(3회)	입찰방법 변경	실시설계 공고	당선작발표 및 계약체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사 공고 및 선정	공사기간 및 준공
2016.10.~ 2017.1	2017.2.~3.	2017.4.~6.	2017.7.	2017.7.~ 2018.5.	2018.6~9.	2018.9~ 2020.5.

자료: 행정안전부

당초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계획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7년에 실시설계 중 공사착공을 병행하여 시작해 2018년 말에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사와 시공사를 한 번에 선정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건설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자 공모가 3회 유찰되었고, 3회 유찰이후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6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고, 예상 공사기한도 1년 6개월 지연(2018년 12월 → 2020년 05월)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통합전산센터라는 특수한 건축물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설계 이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총 공사비 변동의 위험을 설계·시공사가 부담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방호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를 제외하면 유사한 건축사업인 공주의 정부통합백업센터 신축사업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어 2016년 2월까지 7회 유찰 이후에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를 고려할 때 제3통합전산센터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시장 분석 없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전산센터와 같은 특수한 건축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지연된 제3통합전산센터 사업이 이후에는 다른 사업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무원통근버스운행¹⁾ 사업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거주 공무원에게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110억 7,200 중 99.3%에 해당하는 10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11,562	11,562	0	△490	11,072	10,999	0	73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동 예산을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하면서 집행잔액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여 다시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시설관리 세부사업에서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입주 등에 따라 공공요금의 부족하여 공무원통근버스운행의 예상 집행잔액 범위에서 7억 6,400만원을 정부청사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2017년 11월 24일에 자체전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집행잔액을 예상할 때 각 청사가 세종청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계약금액 전부를 연초에 원인행위를 통해 계약하고 월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2232-305

파악하여 원인행위 금액을 바탕으로 집행잔액을 추산하였다. 그런데 서울·과천시사의 경우 해당연도의 계약금액 전부를 원인행위 하지 않고 월별로 원인행위를 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용당시 착오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11월,12월 2개월분)을 집행 잔액으로 보고 전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통근버스 임차료가 부족하게 되어 2억 7,400만원을 12월 14일에 세종청사시설관리 세부사업에서 자체전용하였다.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11. 24)	공무원통근 버스운행-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2232-305)	운영비- 임차료 (210-07)	764	정부청사시설관 리-청사시설유지 보수 (2231-300)	운영비- 공공요금 및세세 (210-02)	과천시 방위사업청 입주('17.1) 및 '17년 공공요금 예산 동결에 따른 부족분 해소
자체 전용 (12. 14)	정부청사 시설관리- 세종청사유지관 리 (2231-304)	운영비- 관리용 역비 (210-15)	274	공무원통근 버스운행-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2232-305)	운영비- 임차료 (210-07)	서울, 과천시 통근버스 11월, 12월 운행에 따른 청구대금 부족분 해소

자료: 행정안전부

전용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제도이지만 단순한 착오에 의해 집행잔액을 자체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전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연수원수입대체경비¹⁾²⁾ 사업은 지방 핵심인재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지방 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17년 예산현액 74억 800만원 중 99.0%인 73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7천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연수원 수입대체경비사업은 지방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조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³⁾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육 편의 제공 및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운영 경비로 사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연수원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연수원수입대체 경비	6,080	6,080	0	1,328	7,408	7,335	0	73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 1) 코드명: 일반회계 1433-650
- 2) 연수원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수입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충당하는 구조이다.
-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연수원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하고 있어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당초 60억 8,000만원이었으나, 교육인원 증가로 13억 2,800만원이 초과지출 승인되어 수입대체경비로 집행되었다.

연도별 초과지출의 원인인 교육인원과 예산액과의 관계를 보면, 예산편성 당시 예상교육인원과 실제교육인원과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초과지출 승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7억 6,100만원 증액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과지출 승인액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초과지출 승인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억 2,000만원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2017년 예산현액보다 8억 992만원 낮고, 실제교육인원의 추이를 보면 2018년에도 교육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대체경비가 「국가재정법」 제53조4)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어 연도 중에 국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연도별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도별 예상교육인원과 실제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상교육인원(A)	6,537	6,433	6,843	7,184	6,721
실제교육인원(B)	7,611	6,815	7,412	8,294	-
예측 차이(B-A)	1,074	382	569	1,110	-

자료: 행정안전부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연도별 초과지출승인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5,496	5,308	5,319	6,080	6,500
예산현액	6,292	7,079	7,217	7,408	-
초과지출승인액	796	1,771	1,898	1,328	-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 황

UN거버넌스센터(UNPOG; UN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지원 사업¹⁾은 한국-UN 간 조약(제1790호)에 의거, UN 회원국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교육·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²⁾에 기여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및 전자정부 구축사례 등을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23억 7,900만원 중 92.9%인 22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UN 거버넌스센터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UN 거버넌스센터 지원	2,379	2,379	0	0	2,379	2,209	0	170
신탁기금	1,725	1,725	0	0	1,725	1,697	0	28
UN 거버넌스센터 운영	654	654	0	0	654	512	0	142

자료: 행정안전부

UN거버넌스센터는 UN회원국의 거버넌스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하여 2006년 9월에 대한민국과 UN과의 조약³⁾에 의거하여 한국에 설립된 UN조직이다. 동 조약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150만달러를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신탁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933-303

2) UN이 경제·사회·환경 영역에서 모든 영역의 빈곤과 불평등 등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한 목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보장 등의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간 기술협력기금협정」(조약 제2298호)

기금으로 공여하고, UNDESA는 해당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UN거버넌스센터의 역량개발사업과 연구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행정안전부는 신탁기금 이외에 UN거버넌스센터의 운영비(건물·집기·시설 및 비품과 건물의 청소·유지·보수 및 보안)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UN거버넌스 센터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연수와 국제 행사를 통해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UN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하는 연수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UN거버넌스센터는 2006년에 출범하여 2016년까지 제1기로 운영되었고, 2017년부터 15년간 제2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기 UN거버넌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행정안전부는 UN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정부혁신, 공공행정 우수사례 발전방안, 지역발전, 전자정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각 국가와 공유하고자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전자정부”에 편중되어 운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UN거버넌스센터 제2기부터는 UN이 2016년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의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정부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7년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연수사업의 경우 아태 지역 SDGs이행 연수단 스터디 투어의 세부내용이 전자정부, 정보화마을 방문, SDGs이행과 ICT활용관련 한국경험 토론·전파 등 여전히 전자정부 영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2017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UNPOG Speech의 경우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UN의 역할이나 SDGs라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참여시킨다는 취지는 일면 타당하지만 UN 회원국 간의 공공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 55

[UN 거버넌스센터지원 사업의 주요 실적]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사업	연구(Research)사업
2016	- CEPA(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및 UN미팅 - 제주포럼(제주포럼사무국, 외교부, UNPOG 공동개최)	아-태지역 여성권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에 관한 보고
2017	- SDGs 이행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심포지움 개최(행정안전부, 인천시, KDI와 공동개최) - UN 공공행정포럼 공동 주최(UN 공공행정국과 협력하여 네덜란드에서 개최) - 아태지역 SDGs이행 연수단 스터디 투어 (아프가니스탄 및 아시아 태평양 14개국 공무원단) ※ 연수내용: 전자정부, 정보화마을 등 방문, SDGs이행과 ICT활용 관련 한국 경험 토론회 - UNPOG Speech 콘테스트 개최(한국 청소년들에게 UN의 역할, SDGs이행이라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참여시키는 기회 제공)	국가별 역량개발수요 정책연구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연수모듈 개발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 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의 진상규명 및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사업¹⁾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관련 수기·사진·박물류 등의 유물 소장·전시, 교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본예산은 20억원으로 1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2,000	2,000	0	0	2,000	1,997	0	3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과 문화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명: 일반회계 2333-3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7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하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2009년 역사관 기본구상 당시 최초 사업비는 469억 4,900만원이었으나 시설부 대경비와 용지보상비가 포함되어 566억 8,7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KDI 타당성재 조사²⁾를 거쳐 2015년 부산광역시 당곡동에 건립되었다.³⁾

역사관 운영예산으로 2016년 19억 5,200만원, 2017년 1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특별전 등 문화학술사업⁴⁾과 문화공연⁵⁾과 같은 교육홍보사업이 확대되어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예산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항목	지출액	지출내역
2016	인건비	329	직원 인건비
	역사관운영	1,472	이전지출,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임차료, 자산취득(유물구입),복리후생비 등
	문화학술사업	97	특별전2회, 도록 및 학술자료 발간 등
	교육홍보사업	54	교육프로그램, 소식지발간 등
	합계	1,952	
2017	인건비	501	직원인건비
	역사관운영	1,267	이전지출,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임차료, 자산취득(유물구입),복리후생비,고객만족도 등
	문화학술사업	144	특별전3회, 학술자료 발간, 국외조사 등
	교육홍보사업	85	교육프로그램, 소식지발간, 문화공연5회 등
	합계	1,997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KDI, 「2010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강제동원역사관 건립사업」, 2010. 2.

3) 조성규모 부지74,465㎡, 건축면적 12,062㎡, 지상 7층(층고)

4) 「4번의 전쟁! 아몰지 않은 상흔」展(2017.6.~12.), 「군함도-미쓰비시 쿤칸지마」展(2017.8.~12.) 등

5) 강제동원 치유를 위한 문화공연 「FoMo Concert」 5회 개최(2017.4.~12.) 등

역사관 관람객은 2016년 7만 1,301명이었으나 2017년 관람객은 9만 6,045명으로 2만 4,744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역사관 기본계획안에서 추정한 관람객은 연간 27만 4,477명이었고, KDI 타당성재조사에서 추정한 관람객은 연간 19만 1,741명으로, 실제 관람객 인원은 기본계획안의 35%, KDI 타당성조사 예측치의 50.1% 수준으로 미흡한 실적이다.⁶⁾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객 수 현황]

(단위: 명)

		2016년(A)	2017년(B)	증감(B-A)
연간 누계		71,301	96,045	24,744
월별	1월	6,933	3,861	△3,072
	2월	4,527	3,350	△1,177
	3월	3,964	5,114	1,150
	4월	4,132	9,408	5,276
	5월	4,904	10,940	6,036
	6월	4,705	9,449	4,744
	7월	4,750	7,264	2,514
	8월	7,350	12,919	5,569
	9월	4,729	10,104	5,375
	10월	8,035	9,748	1,713
	11월	9,024	6,267	△2,757
	12월	8,248	7,621	△627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객 수요예측 실적 비교]

(단위: 명, %)

	수요예측		2017년 실적치(C)	예측대비실적	
	기본안(A)	타당성재조사(B)		(C/A)	(C/B)
연간 관람객	274,477	191,741	96,045	35.0	50.1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6) KDI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역사관이 특정기능을 하는 역사관이며, 인근 지역의 유사 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는 가정으로 기본계획안에 비해서 수요를 낮게 추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관이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역사관 바로 옆에 위치한 유엔평화기념관⁷⁾의 2017년 관람객이 18만 5,584명임을 고려한다면, 역사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

[유엔평화기념관 관람객 수 현황]

(단위: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엔평화기념관	2,298	46,117	90,580	185,584

주 : 2014년은 11~12월 기간 관람객 수입
자료: 유엔평화기념관

이에 동 역사관 운영을 맡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내실 있는 홍보와 전시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⁸⁾

7) 유엔평화기념관은 UN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세계평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건립되었으며, 역사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8) 역사관 운영을 맡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타 역사관과 비교할 때 면적 대비 인력과 지원 예산 수준이 낮아 현재 카페테리아실, 도서관 2개소, 옥상 하늘공원 등 유휴 공간이 많으며, 관람객 확대를 위한 신규 시설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제주4.3평화재단
면적(㎡)	12,062	11,117	11,326	12,314
현원(명)	16	180	55	30
'18년 예산(백만원)	1,900	11,842	2,500	9,400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가. 현 황

지역안전도 진단¹⁾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예방대책 추진, 취약지역·예방 시설 정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별 지역안전도를 진단하는 사업으로 자연안전개선건설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7,300만원 중 72.6%인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역안전개선건설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안전개선건설링	368	368	0	0	368	316	0	52
지역안전도진단	73	73	0	0	73	53	0	20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²⁾에 근거한 제도로써, 진단 방식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으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서면진단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지진단은 전년 기준 하위등급을 받은 지자체, 최근 5년간 현지진단을 받지 않은 지자체, 현지진단 신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진단과 함께 실시된다. 2017년 서면진단은 228개, 현지진단은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2132-301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진단)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서면진단과 현지진단 간 결과값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는 1~10단계의 등급으로 표시되는데, 2017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를 2016년 결과에 비교할 경우,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에 따라 진단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안전도 진단 수행방식에 따른 2016년 대비 2017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단위: 등급)

	서면진단만 받은 지자체(149개)	현지·서면진단을 함께 받은 지자체(79개)
평균 등급변동폭	0.38	2.94
평균 등급변동경향	-0.19	1.1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서면진단만을 받은 149개 지자체의 평균 등급변동폭은 0.38로서 2016년과 비교할 때, 평가등급 상의 큰 변동이 없었으며, 평균 등급변동경향도 -0.19로 안전진단 결과가 2016년 대비 경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을 함께 받은 79개 지자체의 평균 등급변동폭은 2.94로서 2016년에 비해 2017년 평가등급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평균 등급변동경향은 1.14로 2016년 서면진단 결과와 비교할 때 보다 관대한 진단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진단방식에 따라 결과값이 다른 것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진단 지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진단은 재해피해정도, 사회적·지형적 취약성 등 통계적 자료를 요구하는 17개 진단항목을 대상으로 하나, 현지진단은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도를 요구하는 43개 진단항목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지역안전도 진단 수행방식에 따른 2016년 대비 2017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 방식	진단 세부 항목
서면진단	재해발생빈도·인명피해·재산피해액(최근 10년간),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등 17개
현지진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재난상황대응구축 등 43개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진단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역안전도 진단이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수행되고 있는 현지진단 일정은 지나치게 촉박하여 내실있는 진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지진단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10개의 진단반(3인)을 구성하여 총 79개 지자체의 현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현지진단 실시 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 진단반은 하루에 1~2개 지자체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실질적인 진단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일정]

구 분	현지진단 일정				
	10.23(월)	10.24(화)	10.25(수)	10.26(목)	10.27(금)
1반 (서울2, 경기7)	(서울) 성북구, 마포구	(경기) 안양시, 광명시	(경기) 과천시, 군포시	(경기) 화성시, 안산시	(경기) 양주시
2반 (강원8)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속초군	(강원) 양양군, 동해시	(강원) 평창군, 횡성군	(강원) 홍천군
3반 (인천2, 충남2, 충북4)	(인천) 중구, 서구	(충남) 청양군, 보령시	(충북) 청주시	(충북) 진천군, 충주시	(충북) 제천시
4반 (경남5, 충남1, 충북2)	(경남) 남해군	(경남) 진주시, 산청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5반 (전남5, 전북3)	(전남) 진도군	(전남) 강진군, 해남군	(전남) 함평군, 영암군	(전북) 부안군, 고창군	(전북) 군산시
6반 (전북2, 전남6)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구례시, 광양시	(전남) 보성군, 장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담양군
7반 (경북5, 대구1)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	(경북) 포항시	(경북) 청도군, 경산시	(대구) 남구
8반 (부산8)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부산) 중구, 남구	(부산) 부산진구, 동구	(부산) 영도구
9반 (울산4, 부산4)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 북구, 동구	(부산) 동래구, 금정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기장군
10반 (경남3, 부산4, 제주1)	(경남) 창원시, 김해시	(경남) 거제시	(부산) 강서구, 사상구	(부산) 서구, 사하구	(제주) 제주도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현지진단이 지자체에서의 서류점검 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현지진단이 보다 충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진단 일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방재기술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¹⁾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로써, 동 평가의 위탁사업은 재난안전산업활성화²⁾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87.3%인 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방재기술평가 위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산업활성화	654	654	0	0	654	614	0	40
방재기술평가 위탁	150	150	0	0	150	131	0	19

자료: 행정안전부

방재기술평가를 통해 방재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신기술 마크(NET: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공공기관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자금우대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기술평가 신청건수는 총 53건이었으며, 이 중 2017년도에 평가완료 건수는 총 40건으로서, 신규 지정 10건, 기술연장 15건, 부적합 15건이다.

오틀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1131-301

나. 분석의견

방재기술평가 위탁사업은 법정제도로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매년 위탁업체 계약일 이전에는 기술평가 접수가 중단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방재기술평가 제도는 우수 방재기술 보급 등을 위해 정부에서 기술평가를 인 증하는 법정제도로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공개입찰을 실시한 2015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년 위탁업체 계약일 이전에는 기술평가 접수가 중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방재기술평가 위탁계약은 예년보다 늦은 4월 13일에 이뤄짐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신규기술평가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 지 않았다.³⁾

[2015~2018년 방재기술평가 위탁사업 계약기간]

연도	위탁계약기간	계약조건
2015	2월 23일 ~ 12월 31일	-
2016	3월 18일 ~ 12월 31일	-
2017	4월 13일 ~ 12월 31일	2017년도에 접수된 건은 평가완료까지 수행
2018	3월 7일 ~ 12월 31일	2018년도에 접수된 건은 평가완료까지 수행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초에는 방재기술평가 신청문의가 저조하고, 방재기 술평가 위탁계약에 관한 행정절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접수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연중 시기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신청문의가 저조한 것은 연초에 방재기술평가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계약 행정절차를 고려하더라 도 약 50~100일간 평가접수가 불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⁴⁾ 또는 위탁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상시적인 방재기술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다만,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전년도에 접수된 건은 평가완료까지 수행하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차계약·운송계약· 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현 황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¹⁾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예산현액 710억 4,6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17회계연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수저류시설 설치	71,046	71,046	0	0	71,046	71,046	0	0

자료: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은 침투홍수량²⁾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서 2017년에는 우수저류시설 32개소(계속 26, 신규 6) 설치를 위해 동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완공된 우수저류시설은 총 82개소이며, 국비는 총 5,131억원이 투입되었고, 보조금 지원비율은 50%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최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 실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은 2014~15년 90% 수준에서 2016년 75.7%, 2017년 62.5%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월액은 300억 원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2732-301

2) 침투홍수량은(Peak Flood) 홍수기간에 발생하는 우수량의 최대치를 말한다.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4	65,500	65,500	65,500	65,500	6,269	71,769	64,643	7,009	117	90.1
2015	88,130	88,130	88,130	88,130	7,009	95,139	85,398	9,346	395	89.8
2016	71,839	71,839	71,839	71,839	9,346	81,185	61,491	14,101	5,593	75.7
2017	71,046	71,046	71,046	71,046	14,101	85,147	53,255	30,127	1,765	62.5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지방비의 실집행률은 국비에 비해 훨씬 저조한데, 2017년 지방비 예산 710억 4,600만원 중 집행액은 165억 2,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3.3%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2017년 사업비 1,420억 9,200만원 중 실집행액은 627억 4,500만원으로 전체 실집행률은 44.2%에 불과하다.

[2017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재원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실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1,046	71,046	142,092	46,223	16,522	62,745	24,823	54,524	79,347	65.1	23.3	44.2

주: 2017년 예산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실집행률 저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이 도심지에 설치됨에 따라 민원과 보상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17년 실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한 지구 16개소 중 2개 지구³⁾만 준공되었다는 점, ② 민원, 토지보상 등의 사업지연 요소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충남 금산 마전지구, 전북 완주 삼례지구

둘째,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 예산은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예산, 우수저류시설 사업 담당자 교육 예산 등 우수저류시설 사업 관리를 위한 부대경비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⁴⁾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17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사업에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관련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등 운영	일반수용비	23,600	9,163	38.8
우수저류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자료 등 제작	일반수용비	19,400	12,910	66.5
우수저류시설 담당공무원 간담회 운영	임차료	2,000	2,000	100.0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검토회의 현지확인	국내여비	4,000	4,000	100.0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의	사업추진비	3,000	3,000	100.0
계		52,000	31,073	59.8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경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예산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등 운영”과 “우수저류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자료 등 제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각각 38.8%, 66.5%로 낮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사전설계 검토회의 등 집행실적]

업무 구분	계 획	집 행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15회(‘재검토’ 감안)	10회
신규지구 현지실사	1회(외부전문가 3명 × 5개팀)	1회(외부전문가 2명 × 5개팀)
신규지구 선정심의회의	1회(심의위원 10명)	1회(심의위원 4명)
기타(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개정)	-	1회

자료: 행정안전부

4) 코드명: 일반회계 2133-300

가. 현 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¹⁾ 사업은 경찰, 소방 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예산현액 104억 9,300만원 중 집행액은 15억 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52억 6,700만원, 불용액은 36억 6,1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760	1,760	0	97	8,733	10,493	1,565	5,267	3,661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의 불용률은 40%로서 실제 소요에 비해 과다하게 신청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에는 집행소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2018. 2. 9. ~ 25.)과 관련하여 신설경기장 및 선수단 수송로 지역 통화권 개선 등의 보강사업을 위해 2017년 7월 예비비 87억 3,300만원을 배정받았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주변 지역의 기지국 보강을 위해 6억 400만원, 인천공항부터 올림픽 지역까지의 수송로를 중심으로 상용망을 연동하기 위해 81억 2,900만원이 배정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3033-50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 예비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편성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지국 보강	604	0	363	241
상용망 연동	8,129	0	4,904	3,225
계	8,733	0	5,267	3,466

주: 동 사업의 이월액은 2018년 5월 전액 집행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예비비 가운데 집행된 예산(이월액)은 52억 6,700만원으로 예비비의 60%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34억 6,600만원은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난망 검증협의회 결과(2016.7. ~ 10.) 및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보강사업 필요금액을 산정하였지만, 입찰평가 시 사업자가 최고점을 받기 위해 낙찰률을 추정가격의 60% 수준으로 제안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저입찰가격 기준²⁾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초 배정된 예비비의 40%가 불용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비비가 보충적인 예비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동 예비비는 2017년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되어 2018년 5월에 집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따르면 사업 계약이 6~7월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9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출이 시급한 경우 배정되는 재원이며, 관련 예산 집행지침³⁾에서도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이월집행된 점은 향후 예비비 사업 추진 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 247호)에 명시되어 있다.

3)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p142

가. 현 황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¹⁾은 21개의 긴급신고전화를 긴급신고(112, 119), 민원·전문상담(110)으로 통합함에 따른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관리 사업이다. 2017년 예산현액 22억 5,700만원 중 1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6,8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2,257	2,257	0	0	2,257	1,289	0	968
공공요금 및 제세	1,102	1,102	0	0	1,102	416	0	686

자료: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통합은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추진되어 2016년 10월 28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제 소요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이하 “공공요금”)은 11억 2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1,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7.7% 수준이다. 이는 인터넷회선료와 전기요금의 집행률이 낮기 때문인데, 인터넷 회선료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3037-500

예산액은 7억 5,900만원이나 집행액은 2억 9,100만원(38.3%)이며, 전기요금 예산액은 3억 1,300만원이나 집행액은 1억 400만원(33.2%)이다.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102	1,102	416	686	37.7
인터넷회선료	759	759	291	468	38.3
전기요금	313	313	104	209	33.2
기타	30	30	20	10	66.7

이는 실제 소요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인데, 인터넷회선료의 경우, 당초 정보화추진계획서(BPR/ISP) 결과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고속의 데이터 전송속도(300Mbps)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운영결과(2016년 11~12월)를 반영하여 일반회선(약 45Mbps)으로 변경계약함에 따라 4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설치한 장비의 최대소비전력(299kW)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평균 소비전력량은 150kW 수준으로 해당분만 지출됨에 따라 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2018년 공공요금 예산은 7억 6,1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약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17년 집행액보다 약 80% 많은 규모이므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공공요금 집행 추이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355억 4,000만원 (2.2%)이 감소한 14조 8,28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500억 4,100만원(7.6%)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644	6,675	7,863	8,152	289	1,508
기금	13,772,203	15,156,565	15,156,565	14,820,736	△335,829	1,048,533
합계	13,778,847	15,163,240	15,164,428	14,828,888	△335,540	1,050,041

자료: 인사혁신처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133억 3,600만원 (3.5%)이 감소한 17조 1,61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763억 2,700만원(5.4%)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1,604	194,601	194,601	186,971	△7,630	△24,632
기금	16,122,871	17,580,272	17,580,272	16,974,566	△605,706	851,695
합계	16,334,475	17,774,873	17,774,873	17,161,537	△613,336	△876,327

자료: 인사혁신처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억 6,300만원이며, 83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3%인 81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2,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675	7,863	7,863	8,379	8,152	227	0	97.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0
합계	6,675	7,863	7,863	8,379	8,152	227	0	97.3

자료: 인사혁신처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5,35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3조 5,247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526,637	3,526,637	3,529,957	3,522,641	188	7,128	9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700	5,700	5,700	2,066	3,551	83	36.2
합계	3,532,337	3,532,337	3,535,657	3,524,707	3,739	7,212	99.7

자료: 인사혁신처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2조 5,388억 6,600만원이며, 20조 7,212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6%인 20조 6,308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876억 5,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7억 5,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2,538,866	22,538,866	22,538,866	20,721,232	20,630,824	2,750	87,658	91.5
합계	22,538,866	22,538,866	22,533,866	20,721,232	20,630,824	2,750	87,658	91.5

자료: 인사혁신처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2조 5,388억 6,600만원이며, 이 중 91.5%인 20조 6,30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08억 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2,538,866	22,538,866	22,545,032	20,630,824	1,066	610,807	91.5
합계	22,538,866	22,538,866	22,545,032	20,630,824	1,066	610,807	91.5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혁신처의 자산은 17조 9,543억 4,300만원, 부채는 723조 3,804억 1,300만원으로 순자산은 △705조 4,260억 7,0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514억 6,400만원(0.9%)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3조 7,892억 9,900만원, 투자자산 9조 4,663억 6,900만원 및 일반유형자산 4조 6,311억 4,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동자산 3,675억 100만원 증가, 투자자산 1조 1,441억 8,900만원 증가 및 일반유형자산 1조 3,068억 7,4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77조 1,204억 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3,553억 6,900만원, 장기차입부채 3조 1,233억 5,900만원, 장기충당부채 718조 1,510억 800만원 및 기타비유동부채 1조 7,506억 7,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 77조 9,546억 4,400만원 증가, 유동부채 4,233억 3,400만원 감소 및 장기차입부채 5,361억 3,2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7,954,343	17,802,879	151,464	0.9
Ⅰ. 유동자산	3,789,299	3,421,798	367,501	10.7
Ⅱ. 투자자산	9,466,369	8,322,180	1,144,189	13.7
Ⅲ. 일반유형자산	4,631,145	5,938,019	△1,306,874	△22.0
Ⅳ. 무형자산	14,066	14,337	△271	△1.9
Ⅴ. 기타비유동자산	53,464	106,545	△53,081	△49.8
부 채	723,380,413	646,259,967	77,120,446	11.9
Ⅰ. 유동부채	355,369	778,703	△423,334	△54.4
Ⅱ. 장기차입부채	3,123,359	3,659,491	△536,132	△14.7
Ⅲ. 장기충당부채	718,151,008	640,196,364	77,954,644	12.2
Ⅳ. 기타비유동부채	1,750,677	1,625,409	125,268	7.7
순 자 산	△705,426,070	△628,457,088	△76,968,982	△12.2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12,882,163	△636,875,056	1,349,757,219	△211.9
Ⅲ. 순자산 조정	2,767,186	3,729,061	△6,496,247	△174.2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5조 3,861억 5,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41조 4,339억 9,600만원, 관리운영비 807억 900만원, 비배분비용 575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4조 2,945억 4,800만원, 비배분수익 3,549억 9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조 5,36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2,162억 2,800만원(4.7%) 증가한 26조 9,228억 3,3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공무원연금비용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조 3,291억 2,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28조 4,189억원)과 인사관리프로그램(938억 8,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99억 7,100만원과 경비 207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평가손실 139억 7,400만원, 자산감액손실 166억 2,100만원 및 자산처분손실 192억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590억 2,100만원, 자산처분이익 1,313억 100만원 및 자산평가이익 267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 등은 정부외자산수증 1조 5,36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139,448	25,810,322	1,329,126	5.1
가. 프로그램 총원가	41,433,996	38,250,302	3,183,694	8.3
나. 프로그램 수익	14,294,548	12,439,980	1,854,568	14.9
II. 관리운영비	80,709	84,424	△3,715	△4.4
III. 비배분비용	57,586	88,485	△30,899	△34.9
IV. 비배분수익	354,909	276,625	78,284	28.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6,922,833	25,706,605	1,216,228	4.7
VI. 비교환수익 등	1,536,676	1,553,958	△17,282	△1.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5,386,158	24,152,648	1,233,510	5.1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628조 4,570억 8,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05조 4,260억 7,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6조 9,689억 8,200만원(12.2%)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5조 3,861억 5,800만원인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3,497억원, 조정항목은 △52조 9,325억 2,5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조 5,260억 9,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등 재원의 이전 2조 1,763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505억 7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조 2,123억 8,1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51조 9,706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628,457,088	△558,285,833	△70,171,255	△12.6
II. 재정운영결과	25,386,158	24,152,648	1,233,510	5.1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349,700	1,132,062	217,638	19.2
IV. 조정항목	△52,932,525	△47,150,669	△5,781,856	△12.3
V. 기말순자산 (I+II+III+IV)	△705,426,070	△628,457,088	△76,968,98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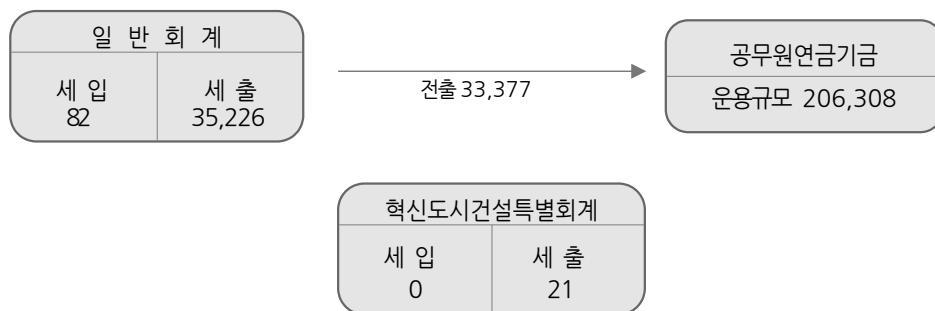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조 3,377억원 전출되었다.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시험시행 사업, ②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③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④ 보유시설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국가시험시행 사업은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3천만원이 감액(118.5억원→118.2억원)되었고,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은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성 제기에 따라 4.8억원이 감액(491억원→486.2억원)되었으며,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은 공정한 선발대책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36억원이 감액(71억원→35억원)되었다¹⁾. 보유시설개보수 사업은 2017년 구매 물품 단가 조정에 따라 21백만원이 감액(8,437백만원→8,416백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가시험시행 사업, ②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사업, ③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다.

국가시험시행 사업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보안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어 2억원이 증액(118억원→120억원)되었고, 인사혁신처정보화 사업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기술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1억원이 증액(13억원→14억원)되었다.²⁾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은 보유시설개보수 사업비 감소에 따라 21백만원이 증액(1,967,016백만원→1,967,037백만원)되었다.

1) 안전행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인사혁신처는 ①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②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확대, ③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재정립, ⑤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8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두 제도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적정 규모와 통합적인 사업관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신규직위의 경우 근무개시일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제도를 통해 추천한 인재가 국제기구의 심사에서 직무요건이나 어학능력 부족 등으로 모두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시험시행과 관련하여 9급 공개채용시험의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의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재가 선발되는 비율이 낮은 측면이 있고, 일부 특수직렬에서 해당 과목에 필수적인 역량과 관련된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합격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하락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세무직렬에서 세법개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 현 황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사업¹⁾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225억 9,000만원 중 93.0%인 2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고용 휴직제도운영	22,590	22,590	0	0	22,590	21,000	0	1,590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부대경비를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에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하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제 60조²⁾에 따라 부처별 고용휴직자 공모, 고용휴직자 성과평가, 직위존치평가 등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4-531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00개 직위에 98명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혁신처가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용휴직(이하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라 한다)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직위를 확보한 후 소속 공무원 중 국제기구에 근무할 자를 선발하거나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의 직위에 개인 자격으로 응모하여 선발될 경우 휴직을 하고 해당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연혁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각 부처가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를 부처 예산에 편성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OECD 사무국에서 고용휴직 공무원의 어학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現 인사혁신처)가 선발 및 관리를 주관하고 관련 예산은 2007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편성되었다.³⁾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한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고용휴직자의 인건비가 개별 부처에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된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제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함에 따라 개별 부처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

2)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78.

지 않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이전과 같이 각 부처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비교]

구분	인사혁신처 주관	각 부처 자체
의의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가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5절
기간	총 3년 원칙,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	총 3년 원칙,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
공모 범위	전 부처 또는 유관 기관 공모	부처 내 공모
보수 기준	국제기구 자체 보수규정에 따름	
예산	인사혁신처 예산	국제기구가 부담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31개 부처에 100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고,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18개 부처에서 6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고, 동일한 국제기구에 두 제도의 고용휴직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부처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직위 수]

(단위: 직위 수)

순위	부처명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합계
1	기획재정부	17	24	41
2	해양수산부	7	3	10
3	과기기술정보통신부	8	1	9
4	산업통상자원부	5	3	8
5	외교부	2	6	8
6	환경부	6	2	8
7	국토교통부	6	1	7
8	농림축산식품부	4	3	7
9	특허청	3	5	8
10	고용노동부	6	0	6
11	관세청	1	4	5
12	산림청	1	4	5
13	보건복지부	4	0	4
14	교육부	3	1	4
15	문화체육관광부	4	0	4
16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4
17	인사혁신처	3	0	3
18	국민권익위원회	1	1	2
19	금융위원회	2	0	2
20	방송통신위원회	1	1	2
2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22	경찰청	0	2	2
23	통일부	2	0	2
24	공정거래위원회	1	0	1
25	행정안전부	0	1	1
26	농촌진흥청	1	0	1
27	감사원	1	0	1
28	국무조정실	1	0	1
29	기상청	1	0	1
30	대검찰청	0	1	1
31	문화재청	1	0	1
32	법무부	1	0	1
33	여성가족부	1	0	1
34	조달청	1	0	1
합계		100	64	164

자료: 인사혁신처

[동일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국제기구명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관세청	WCO	1	4
교육부	UNESCO	3	1
기재부	ADB	1	5
	AfDB	1	1
	EBRD	1	2
	IBRD	3	3
	IDB	1	3
	IMF	3	4
농식품부	FAO	2	3
산림청	UNCCD	1	1
외교부	한아세안센터	1	1
특허청	WIPO	3	3
해수부	FAO	2	1
환경부	WHO	1	1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두 제도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성과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두 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에 따라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 그 결과를 국제기구가 재외공관과 외교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휴직이 종료된 후 근무성과·국제기구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5절에 따라 소속 장관이 국제기구 평가결과, 업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이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고용휴직 제도의 적정 규모 및 각 국제기구별 고용휴직 직위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제도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제기구의 실제 고용개시일을 고려한 인건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85개 직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100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5개의 직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신규직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제기구 임용 절차를 감안하여 6개월(180일) 고용휴직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16년 및 2017년의 국제기구고용휴직자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신규직위(20개) 후보자가 국제기구에 고용되기까지 평균 392일이 걸렸고, 2017년의 경우에도 신규직위(15개) 후보자가 국제기구에 고용되기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다. 또한 2017년의 경우 6개 신규직위는 2017년에 임용되지 않아 2018년에 2개 직위가 임용되고, 4개 직위는 아직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신규직위 임용 시기]

(단위: 개, %)

연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차년도 1월	2월	3월	6월	7월	8월	진행중
2016	20	1	-	-	-	2	5	2	4	3	1	1	1	-
	100%	5%	-	-	-	10%	25%	10%	20%	15%	5%	5%	5%	-
	※ 평균 소요기간: 392일													
2017	15	1	2	3	1	1	1	1	-	1	-	-	-	4
	100%	67%	133%	20%	67%	67%	67%	6.7%	-	67%	-	-	-	26.7%
	※ 평균 소요기간: 285일													

주: 평균 소요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임용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신규직위 후보자가 국제기구에 임용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6개월분의 예산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이 국제기구 면접에서 모두 탈락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고용휴직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와 직위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및 면접방식 등을 결정하고, 직위에 추천할 후보자를 3개월 기간의 국내 선발과정을 통하여 1~3명 선발한 뒤 국제기구에 추천하면 국제기구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해당 인원을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근 3개년 국제기구 면접에서 우리나라가 추천한 후보자가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5건 발생하였고, 2017년에만 4건(2017년 신규 임용자 30명)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직무요건 미충족과 어학성적 미달 등 국제기구와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면밀한 국내선발 절차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추천한 후보자가 면접에서 모두 탈락하여 국제기구의 직위에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할 인재를 적시에 파견하지 못하는 동시에 국내 후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와 사전 협상 시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직무요건, 어학능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국내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기구의 직위에 우리나라가 추천한 후보자가 모두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3개년 간 국제기구 추천 후보자가 모두 탈락한 경우]

관련 직위	연도	탈락 사유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경제개발연구부	2016년	추천한 후보자(3명)에 대한 면접결과 부적격 통보(구체적 부적격 사유는 미통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무역농업정책과	2017년	추천한 후보자 2명의 경력이 직무요건에 다소 못 미침
IDI(세계감사원기구개발기구) INTOSAI-Donor사무국	2017년	후보자 2명을 국제기구에 추천하였으나, 면접결과 직무수행요건에 맞는 1명이 지원 포기, 다른 1명은 직무요건 다소 맞지않음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술정책과	2017년	추천한 후보자(1명)가 직위이 비해 다소 높은 경력 보유, 어학능력 불충분
FAO(UN식량농업기구)	2017년	당초 후보자 3인 중 1인이 어학성적 미달로 탈락하여 2인의 후보자를 FAO측에 추천 하였으나, 3인 후보자 재추천 요청

자료: 인사혁신처

III

개별 사업 분석

1

9급 공개채용시험의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개선 필요

가. 현 황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사업은 국가직 5·7·9급 공개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시행·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시험시행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102억 1,300만원 중 96.7%인 9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시험시행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시험시행	12,043	12,043	0	0	2,149	14,192	13,819	0	373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8,064	8,064	0	0	2,149	10,213	9,875	0	338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시험과목을 개편하여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행정경의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유지하고 개편 전 필수과목인 행정법 및 행정학(일반행정 기준)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면서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여 총 5개의 선택과목 중 2개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국가직 9급 시험의 선택과목 개편]

직렬(직류)	개편 전(필수과목)	개편 후(선택과목)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국가직 9급 공개채용시험의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도입 후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비율은 높은 반면,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시행 후 정책목표인 고졸이하 합격자 추이를 보면, 고졸이하 합격자의 합격률은 매년 낮은 수준이고 2017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0.1% 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도입이 고졸학력자 공직진출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직 9급 시험의 고졸이하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합격자수	2,618	3,077	4,176	4,445	5,617
고졸이하 합격자수	7	1	8	4	4
비율	0.3	0.0	0.2	0.1	0.1

주: 2005년부터 공개채용 응시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학력파악이 어려워 17~19세 합격자를 고졸이하 합격자로 추정하여 작성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제도 변경 이후 국가직 9급 합격자가 1개 이상의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2013년 41.9%에서 2017년 66.7%로 증가추세에 있다.²⁾ 또한 일부 특수직렬에서 해당 특수직렬에 필수적인 역량과 관련된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및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2017년 68.9%로 절반이상의 합격자가 해당 직렬에 필수적인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직 9급 시험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6년		2017년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세법 및 회계학 중 1개 과목 이상 선택	311	49.9	473	29.7	344	31.1	1,945	32.3
모두 선택 (세법+회계학)	245	39.3	319	20.1	221	20.0	1,382	23.0
세법만 선택	43	6.9	77	4.8	54	4.9	300	5.0
회계학만 선택	23	3.7	77	4.8	69	6.2	263	4.4
세법 및 회계학 모두 미선택	312	50.1	1,118	70.3	762	68.9	4,073	67.7
합계(전체 합격자수)	623		1,591		1,106		6,018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에 대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시험과목 개편은 공직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직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가 공직 채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타당한 측

2) 연도별 비율은 41.9%(2013) → 49.2%(2014) → 65.4%(2015) → 67.0%(2016) → 66.7%(2017)

면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이하
학력의 합격자 비율은 나아지지 않는 반면, 직무 관련 전문지식의 검증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므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특수 직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전문 과목을 적어도 1과목이라도 필수과
목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¹⁾은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3억 6,600만원 중 95.3%인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는 경영·공정거래, 법무·사법·인권, 과학기술·정보통신, 재정·통상·금융·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30만여 명에 대한 인물정보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개방형직위 후보 및 선발위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위원, 책임운영기관장 후보 및 선발위원, 공공기관 임원후보 및 추천위원 등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인물을 검색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내실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366	366	0	0	366	349	0	17
국가인재DB 운영지원 등	314	314	0	0	314	298	0	16
민간스카우트제 및 국민추천제 추진	32	32	0	0	32	32	0	0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20	20	0	0	20	19	0	1

자료: 인사혁신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643-301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행사를 예산의 조정을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부처·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적극적 인재발굴’의 중요성 전파 및 선진사례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를 2016년과 2017년 개최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동 세미나가 해외정부 및 선진기업의 핵심 관계자 등 200여명의 공공 및 민간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인재발굴 전략을 마련하고 인사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행사 개요]

- 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략적 인재발굴 및 확보방안 모색(STAR Seminar)
- 주최/주관 : 인사혁신처/인재정보담당관실
- 일시 : 2017. 12. 15(금) 10:00 ~ 16:50
- 장소 : 용산구 블루스퀘어 3층 카오스홀(250석 규모)
- 참석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민간·학계 인사 전문가, 언론사 등
- 주요내용
 - 발제
 - ① 디지털 시대 글로벌 선진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
 - ② 글로벌 IT 및 스타트업기업의 핵심인재 확보전략
 - ③ 해외 공공부문 인재발굴 전략
 - ④ 정부부문 전략적 인재발굴 및 성공 사례
 - 전문가 자유토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글로벌 사례를 통한 정부 및 민간의 핵심인력 확보 필요성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세미나 사업비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016년도에는 3,933만원을 기관운영경비를 통해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4,398만원을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충당하였다.

2017년의 경우에는 세미나의 행사장 임차료와 전문업체의 행사용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목) 2,500만원을 임차료 500만원(201-07목)과 일반용역비(210-14목) 2,000만원으로 조정한 후 일반수용비가 부족하여 다시 공공요금 및 제세(201-02목)의 집행잔액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였다.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용	집행금액
일반수용비	수당(참석 패널 등), 번역비(프로그램북, 초청장, 정보제공 동의서 등), 기념품	11,118
공공요금및제세	임차 보험(행사장)	379
임차료	장소 임차(행사장)	4,950
일반용역비	행사 용역(기자재 설치, 배너·인쇄물 제작·설치, 케이터링, 통역, 행사장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19,990
국내여비	출장 여비	1,102
국외업무여비	외빈 초청(항공, 숙박 등)	5,448
관서업무추진비	외빈 초청 만찬 등	990
합계		43,977

자료: 인사혁신처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비용 관련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조정 (세목 조정)	국가인재 데이터 베이스내실화 (1643-301)	210-02	6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1643-301)	210-01	조정에 따른 일반 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1	5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1643-301)	210-07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대관료
			20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1643-301)	210-14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대행 업체 용역비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세미나가 2016년에는 신규 행사로 계획되어 예산에 내역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했고, 2017년의 경우에도 개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예산에 내역사업으로 계상하지 않고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통해 추진하였

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 세미나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인재발굴의 중요성 및 선진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목적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참여자들의 평가²⁾역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국제행사 예산편성은 다른 행사예산보다 엄격한 편성절차를 따르도록 규정³⁾하고 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조정 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향후에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를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미나 발표내용에 대한 만족도 83.6%, 운영에 대한 만족도 91.9%

3) 1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행사는 「국제행사관리지침」 상의 타당성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국제행사계획서와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 현 황

퇴직준비교육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은 공무원의 퇴직준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및 퇴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교육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4억 4,000만원 중 72.3%인 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00만원을 이월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105	2,105	0	0	2,105	1,883	99	123
퇴직준비교육 및 컨설팅 운영	440	440	0	0	440	318	99	2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퇴직준비교육 개발관련 연구용역의 연도 중 내용 변경으로 인해 연구용역 기간이 지체되어 관련 예산이 이월 되었는바 향후에는 퇴직준비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변화하는 퇴직준비교육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 동 내역사업에서 수행하던 교육과정인 전직설계과정(퇴직 예정 1년 이내)²⁾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미래설계과정(퇴직예정 1년 이상 5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644-303

2)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봉사활동) 등 퇴직 후 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년 이내)³⁾과 유사·중복 사업이고 공무원의 퇴직교육으로서 내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전직설계과정과 미래설계과정은 통합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교육의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퇴직준비교육 및 컨설팅 운영 사업에서 퇴직준비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교육의 시범운영과 퇴직준비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2017년에 퇴직준비교육 신규과정 개발에 2억 1,900만원(이월액 9,900만원 포함) 퇴직준비 관련 컨설팅에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다.

[퇴직지원 관련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 배분 변화]

구 분	변경 전(2017년 이전)	변경 후(2017년)
인사혁신처	· 전직설계과정 운영	· 퇴직지원 종합체계 설계 · 신규과정 개발 및 퇴직준비 관련 컨설팅 운영
공무원연금공단	· 미래설계과정 운영	· 전직설계과정 및 미래설계과정 운영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사혁신처는 2017년 당초 기존에 전직설계과정을 퇴직 단계별로 세분하여 퇴직경력 탐색과정(퇴직예정 5년 내외), 퇴직경력 설계과정(퇴직예정 3년 내외), 사회적 가치 실현형 멘토 양성과정⁴⁾(퇴직공무원,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8년에는 이를 표준모델화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공무원 퇴직관련 교육기관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퇴직준비교육과 연관된 정책인 공로연수제도의 내실성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⁵⁾하자 인사혁신처는 공로연수자의 퇴직준비를 위한 집중연수과정 마련과 다른 교육 과정의 기간연장 등 내실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 기간이 지체(당초 9월 ~ 12월 → 9월 ~ 2018년 1월)되면서 관련 예산인 9,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3) 은퇴설계, 자산관리, 건강관리, 여가설계 등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4) 공무원의 축적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조직의 설립, 운영 개선, 활동 기획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5)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박남춘 의원, 2017. 10. 12)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변경]

과정명	주요대상	당초 개발 계획	변경 계획
퇴직경력 탐색과정	○ 퇴직예정공무원 (잔여기간 5년 내외)	4시간	2일
퇴직경력 설계과정	○ 퇴직예정공무원 (잔여기간 3년 내외)	3일	4일
사회적 가치 실현형 멘토 양성과정	○ 퇴직공무원 ○ 퇴직예정공무원 (잔여기간 1년 이내, 공로연수자)	5일	15일(3주)

자료: 인사혁신처

[퇴직준비교육 개발 관련 용역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2017년 공무원 퇴직 준비교육 개발 및 시범운영	- 단계별 퇴직준비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퇴직준비교육 홍보 및 사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2017.8.1 ~ 2018.2.14	219,073 (98,958)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당초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특별교육 과정에 편성하여 운용한 후 2019년 같은 기관의 정규과정에 편성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 퇴직준비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성과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교육과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¹⁾은 국민안전, 국가인재 양성, 중앙·지방 협력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 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36억원 중 95.5%인 34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퇴직공무원사회공헌 프로그램	3,600	3,600	0	0	3,600	3,436	0	164
과제수행 활동비	3,480	3,480	0	0	3,480	3,331	0	149
사업관리	62	62	0	0	62	61	0	1
운영경비	58	58	0	0	58	45	0	13

자료: 인사혁신처

동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익증진이 가능한 세부과제를 공모받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할 세부과제를 결정한 후 사업에 참가할 퇴직공무원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퇴직공무원이 세부과제를 수행하면 정해진 단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에는 국민안전, 멘토링·컨설팅, 공직인재양성, 중앙·지방협력 4개 분야 36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219명의 퇴직공무원이 8개월(2017.5월~12월) 동안 활동하여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약 200만원(150~280만원)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일반회계 1644-305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부 과제 및 주요활동 현황]

(단위: 명)

분야	부처명	세부과제명	참가 인원	주요 활동내용
국민 안전 (6개)	소방청	학교안전 지도관	22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 학교 여행시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 컨설팅	13	식품안전관련 법령 교육, 위생관리 제도 등
	경기도	학교폭력 재심 지원	4	학교폭력재심관련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컨설팅	8	영세 선박회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안전 컨설팅 등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관리 컨설팅	8	소규모 수산물생산가공업체를 대상 식품 안전관리 등
	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 컨설팅	4	재난대비훈련 컨설팅 및 평가 등
멘토링 컨설팅 (9개)	법제처	기초지자체법제자 문관	10	자치법규 제개정시 체계·내용, 법리적 검토 및 자문 등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	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신청기관 대상 방문교육 등
	법무부	보호관찰 멘토링	4	보호관찰청소년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기술자문 코디네이터	4	중소기업 기술컨설팅, 정부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관세청	X-Ray 검색요원 판독지원	5	X-Ray 판독교육, 판독영상 DB 구축 지원 등
	조달청	국가계약 멘토링	6	국가계약 질의회신 및 상담, 계약업무 전반 컨설팅
	조달청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1	해외 조달시장 진출 관련 제도, 입찰절차, 분쟁 예방 등 컨설팅
	경찰청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18	전문분야별 현장 멘토링, 경찰교육 기관 직무교육 등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컨설팅	6	수출업체 또는 현지진출 기업에 통관애로 컨설팅 등
공직 인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6	공직가치, 인재개발, 글로벌 분야 강의 등

(단위: 명)

분야	부처명	세부과제명	참가 인원	주요 활동내용
양성 (14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3	공직가치, 역량개발 분야 강의 및 연구
	환경부	(환경인력개발원)	1	환경제도 관련 강의, 사이버 환경 교육 개발 지원 등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3	공직가치 강의, 해양수산 정책분야 강의 등
	조달청	(조달교육원)	1	조달교육 전문분야(공직가치, 조달업체 성장교육) 강의 등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1	방위사업 정책관리, 방위사업 계약관리 등 교육
	기상청	(기상기후인재 개발원)	1	예보, 관측, 기후 분야 강의, 실습 지도 등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재 개발원)	1	역량강화교육, 연구, 자문 등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2	재난현장 지휘사례, 현장안전관리 등 강의, 연구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 전교육원)	2	재난대비 교육과정 강의, 분임활동 지도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원)	2	지방공기업 정책분야, 공유 재산 관리분야 등 강의, 연구
	법제처	(법제처)	1	국토·건축법령 분야 법제교육 교재 개발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1	세법학, 회계학, 국세행정분야 직무교육 등
	관세청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5	관세행정 전문분야(감정, 심사, 조사, FTA 등) 강의
중앙 ·지방 협력 (7개)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보상 현장조사	4	재해공무원 찾아가는 서비스, 재해 현장조사 등
	국가보훈처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10	이동보훈팀 현장민원실 운영, 재가복지 모니터링 등
	문화재청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6	문화재 돌봄사업 모니터링, 문화재돌봄단체 컨설팅 등

(단위: 명)

분야	부처명	세부과제명	참가 인원	주요 활동내용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컨설팅	1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인력 기술교육, 지도 등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10	일자리 현장방문, 일자리 수행기관 업무 컨설팅 등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검토 등	8	예산낭비신고 사례 검토 및 처리 등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정책 컨설팅단	15	자치단체별 이슈 관련 정책설계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세부과제 수	퇴직공무원 수	활동기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36	219	2017. 5.~12.	약 2,000(1,500~2,800)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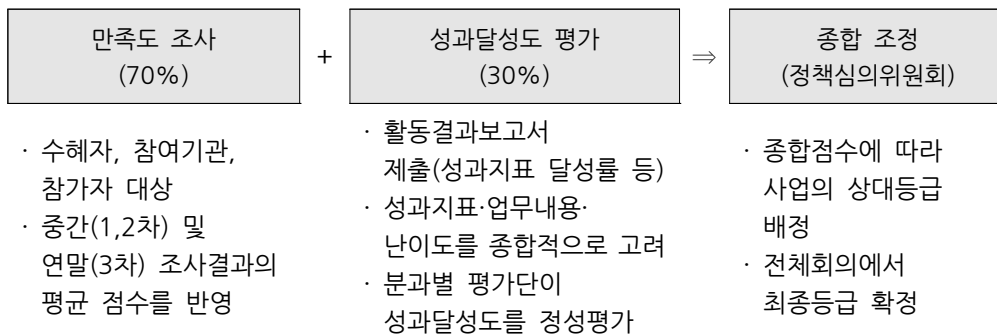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과제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과제별로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사업종료 후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세부과제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는 만족도(70%), 성과달성도(30%)를 고려하여 상대등급을 배정한 뒤 최종적으로 5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보통 이상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고 미흡 이하인 사업은 종료한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수혜자, 참가자(퇴직공무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각 5:1:1의 비율로 만족도에 반영한다. 성과달성도의 경우 각 참여기관에서 설정한 세부과제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기초로 세부과제별 업무내용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효과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성과달성도를 판단한다.

[2017년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 성과평가 방식]



그런데 만족도 조사의 경우 반영비율은 낮지만 참가자와 참여기관은 일종의 서비스 공급자인데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여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또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참여기관의 직원이므로 참여기관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같이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성과달성도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성과지표를 보면 자문건수, 강의건수, 수행건수 등과 같이 단순한 지표이고, 같은 강의라고 하여도 강의 시간, 강의 횟수, 강의 만족도 등 기준이 다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세부과제의 경우 강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 성과평가 지표인 만족도 조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 일부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률 현황]

분야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값
공직 인재 양성	중앙소방학교	강의 출강률	80%(연 40회)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FT ¹⁾ 등 참여율	계획대비 90% 이상
		사전 강의 수강율	계획대비 90% 이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의, FT 등 참여율	계획대비 90% 이상
	법제처	교재개발 참여율	1,400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의, FT 참여율	12.6시간(월평균)
		연구실적 제출건수	4건
	지방공기업평가원	강의, 멘토링 등 참여율	14.4시간(월평균)
	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검수	3,000쪽
		연구보고서 건수	4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강의, FT 등 참여율	14.4시간(월평균)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시간 달성도	120시간(연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강사만족도 달성률	8.26점
	조달교육원	강의시간 달성도	32회(연간)
	방위사업청	강의시간 달성도	20시간(월평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강의, FT 등 참여율	128시간(연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의, FT 등 참여율	17.5시간(월평균)

주: 1) Facilitator의 약어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사업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달성률은 참고적 지표로 활용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 난이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성과달성도를 평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의 목적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는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한 예산과목에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사업 참가 퇴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 및 면접 수당 등을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였고 기타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010-01목)에서 3,000만원을 기타운영비(210-16목)로 조정하여 서류심사 위원수당으로 1,700만원 면접심사 위원수당으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조정	퇴직공무원사회 공헌프로그램 (1644-305)	210-01	4	퇴직공무원사회 공헌프로그램 (1644-305)	210-07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 소요 임차료·기타 운영비 부족분 충당
			30		210-16	

자료: 인사혁신처

[사업참가 퇴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기타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계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30	17	13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유사 사업인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집행 사례에 준하여 퇴직공무원 선발 시험의 서류심사수당 및 면접수당을 기타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설명이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기타운영비로 면접수당 등을 지급²⁾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참가할 퇴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선발관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수당은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금 성격의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편성³⁾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방식이라고 보인다.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64

3)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9

가. 현 황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 본원) 내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육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57억원 중 36.2%인 2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5,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인재원 기숙사 증축	5,700	5,700	0	0	5,700	2,066	3,551	83
기본조사설계비	248	248	0	△248	0	0	0	0
실시설계비	493	493	0	0	493	410	0	83
공사비	4,878	4,878	0	248	5,126	1,596	3,530	0
감리비	69	69	0	0	69	48	21	0
시설부대비	12	12	0	0	12	12	0	0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은 현재 180명 규모의 기숙사를 472명(추가면적: 10,234㎡)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하여 총 65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4억원이고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2017년 예산은 57억원 2018년 예산은 116억 8,900만원(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은 152억 4,000만원)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명: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736-300

동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 준공 시 국가인재개발원 기숙사를 현재 증축예정 규모로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였으나 재정당국과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기숙사 수용인원을 변경(652명 → 180명)하고 총 사업비 981억원, 건물면적 32,306㎡(9,734평)규모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9월 1일 진천 본원을 준공 완료하였고, 같은 해 9월 26일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전을 완료하였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재지인 충북 진천은 배후도시·대중교통·인근 숙박시설 등이 부재하여 교육생이 기숙사 이외에 정주시설에 숙박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합숙교육이 진행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준공되기 이전부터 증축공사를 준비하여 2017년 예산을 확보해 증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차질없는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당초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은 2017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종료하고 이를 토대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하는 계획이었다.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계획 및 향후 일정]

기후진					향후 계획
실시설계 입찰준비	실시설계 조달계약의뢰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 조달의뢰 및 선정	공사기간 및 준공
2017.1~2	2017.3.	2017.5.	2017.5~8	2017.8.~9.	2017.11~2018.12 (13개월)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실시설계 및 공사 업체선정과 관련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누적 지연 발생으로 공사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연내로 예정되어 있던 1차 공사가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1차 공사비로 편성되어 있던 35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공기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2018년 7월말 현재 54%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어 계획대로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단순한 행정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공기가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2017년의 경우 기숙사 규모가 부족하여 신입관리자(5급) 과정 등의 합숙교육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로 2억 7,4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 지연 요소 없이 2018년 말에 증축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기본설계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동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여 이를 공사비로 조정하여 이월하였다.

동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받았지만 국가인재개발원 인천 본원 준공시 현재 증축예정인 국가인재개발원기숙사를 목표로 기본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1월 증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공공건축지원센터²⁾ 및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기본조사 설계를 면제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미집행한 기본조사설계비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로 조정하여 이월하였다.

공사비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실시설계 완료 시점(2017. 8. 26)과 조달청에 조달 의뢰 검토시점 사이인 2017년 9월 1일에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노무비가 실시설계 완료 금액보다 2억 4,000만원이 상승하여 기본조사설계비를 건설비로 조정하여 이월하였다는 설명이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재료비 및 각종 경비 등	노무비	합계
2017년도 상반기 기준 (8.26. 설계완료시) 공사비	6,569	7,788	14,357
2017년도 하반기 기준 (9월초 조달청 검토시) 공사비	6,569	8,028	14,597
증가분	0	240	240

자료: 인사혁신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공공건축 사업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그런데 국가인재개발원 신축 사업이 기본설계에 면제대상 사업이었다면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인 바 향후 건축공사 등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보인다.



경찰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02억 7,200만원(5.5%)이 증가한 9,58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06억 4,600만원(3.1%)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988,987	908,069	908,069	958,341	50,272	△30,646

자료: 경찰청

2017회계연도 경찰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696억 9,700만원(1.7%)이 감소한 10조 2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465억 6,700만원(4.7%)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9,553,680	10,155,171	10,169,944	10,000,247	△169,697	446,567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080억 6,900만원이며, 2조 77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7.7%인 9,583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1조 236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57억 2,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34,830	834,830	834,830	1,934,307	884,925	1,023,658	25,724	45.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3,239	73,239	73,239	73,450	73,415	33	2	99.9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0	0	0	2	2	0	0	100.0
합계	908,069	908,069	908,069	2,007,758	958,341	1,023,691	25,726	47.7

자료: 경찰청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조 1,824억 3,7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10조 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67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54억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078,098	10,092,871	10,105,312	9,927,302	16,788	161,223	98.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3,239	73,239	73,291	69,111	0	4,180	94.3
지역발전특별회계	3,834	3,834	3,834	3,834	0	0	100.0
합계	10,155,171	10,169,944	10,182,437	10,000,247	16,788	165,403	98.2

자료: 경찰청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은 12조 9,132억 1,700만원, 부채는 2,075억 2,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7,056억 8,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275억 100만원(3.4%)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조 204억 5,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1조 8,134억 9,600만원, 무형자산 493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찰관서 신축 등에 따른 토지 2,336억 200만원 증가, 건물 1,156억 4,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94억 8,500만원(16.6%)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441억 7,300만원, 장기차입부채 669억 4,300만원, 장기충당부채 588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경북청 신축부지 잔금 미지급금 등에 따른 기타유동부채 72억 900만원 증가, 무기계약직 등의 퇴직급여추계액 증가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 89억 5,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2,913,217	12,485,716	427,501	3.4
Ⅰ. 유동자산	1,020,456	938,554	81,902	8.7
Ⅱ. 일반유형자산	11,813,496	11,468,084	345,412	3.0
Ⅲ. 무형자산	49,399	43,770	5,629	12.9
Ⅳ. 기타비유동자산	29,866	35,307	△5,441	△15.4
부 채	207,528	178,043	29,485	16.6
Ⅰ. 유동부채	44,173	34,892	9,281	26.6
Ⅱ. 장기차입부채	66,943	61,965	4,978	8.0
Ⅲ. 장기충당부채	58,828	42,076	16,752	39.8
Ⅳ. 기타비유동부채	37,583	39,111	△1,528	△3.9
순 자 산	12,705,689	12,307,672	398,017	3.2
Ⅰ.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852,872	1,512,332	340,540	22.5
Ⅲ. 순자산 조정	3,954,168	3,896,690	54,478	1.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0조 9,981억 8,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조 2,772억 4,400만원, 관리운영비 9조 7,848억 5,600만원, 비배분비용 635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25억 4,100만원, 비배분수익 912억 3,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7억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4,391억 8,800만원(4.2%) 증가한 11조 18억 9,2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490억 6,000만원(4.8%)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치안인프라구축프로그램(3,428억 3,000만원)과 교통안전·소통확보프로그램(2,741억 1,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조 6,688억 7,700만원과 경비 2조 1,159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123억 7,000만원과 기타비용 476억 4,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44,702	1,215,091	29,611	2.4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77,244	1,244,712	32,532	2.6
나. 프로그램 수익	32,541	29,621	2,920	9.9
II. 관리운영비	9,784,856	9,335,796	449,060	4.8
III. 비배분비용	63,571	258,484	△194,913	△75.4
IV. 비배분수익	91,237	246,667	△155,430	△63.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001,892	10,562,704	439,188	4.2
VI. 비교환수익 등	3,705	147	3,558	2,420.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998,187	10,562,558	435,629	4.1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2조 3,076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7,056억 8,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980억 1,700만원(3.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0조 9,981억 8,700만원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 규모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조 3,387억 2,700만원, 조정항목 574억 7,700만원 등 총 11조 3,962억 4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2조 2,353억 7,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966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574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2,307,672	11,502,648	805,024	7.0
II. 재정운영결과	10,998,187	10,562,558	435,629	4.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338,727	10,677,135	661,592	6.2
IV. 조정항목	57,477	690,446	△632,969	△91.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2,705,689	12,307,672	398,017	3.2

자료: 경찰청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75억 6,000만원이 전출되었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전출 37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8,849	99,273		734	691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3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2백만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기동순찰대 신설 사업, ②노후 채증장비 교체 사업 등이 있다.

기동순찰대 신설 사업은 기존 지구대·파출소에 적정 근무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단위로 기동순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12억원이 감액(순감)되었고, 노후 채증장비 교체 사업은 기존 장비의 교체 시급성이 크지 않으므로 3억원이 감액(15억원→12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경찰관서 내진보강 사업, ②독도경비대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경찰관서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이 발생한 울산, 경북지역은 위험수준이 높아 경찰서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44억원(56억원→100억원)이 증액되었고, 독도경비대 환경개선 사업은 강풍·해수 등으로 시설의 고장이 잦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수리·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8억원(순증)이 증액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의경대체지원 사업이 있다. 의경대체지원 사업은 “살수차의 살수수압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직사살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살수차 운영지침에 반영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신임경찰관 추가 채용 사업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채용 관련 경비는 경찰 1,104명의 채용에 필요한 소요를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⁴⁾

3) 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 7.

경찰청은 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안역량 강화**, ②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는 **법집행 활동 적극 지원**, ③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력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경찰청(본청)에 소속된 조직 중 ‘수사구조개혁단’ 등 9개 조직을 직제 외로 운영하였다. 본청에 소속된 임시 조직 중 일부는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2016년 이전에 신설되었음에도 여전히 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원 대비 현원 초과로 인한 경찰대학 인건비 부족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전용집행하고 있다.

둘째, 장비관리 유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은 장비관리 유지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총 41건의 계약 중 15건의 계약에서 21억원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말을 비롯한 하반기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셋째,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적합 측면이 있었다. 경찰청은 신임순경 교육생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 제공할 숙소, 피복 및 급식 제공을 명목으로 신임순경 교육 사업에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았다. 그러나 예비비를 배정받은 비목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경찰청은 동 사업에서 예비비 배정액을 초과하는 7억 7,7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 집행하였다.

1

경찰청 인력 운용의 문제점

경찰청 인건비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본부 인건비¹⁾와 소속기관 인건비²⁾로 구분된다. 본부인건비는 경찰청 인건비, 지방경찰청 인건비, 방위비 인건비로 구성되며, 소속기관 인건비는 경찰대학 인건비, 경찰교육원 인건비, 중앙학교 인건비, 수사연수원 인건비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의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경찰청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부 인건비	7,693,303	7,693,303	△8,686	7,684,615	7,545,277	139,338
경찰청(본청)인건비	1,682,586	1,682,586	△86,126	1,596,459	1,463,441	133,018
지방청인건비	5,949,732	5,949,732	78,914	6,028,645	6,024,907	3,738
방위비인건비	60,985	60,985	△1,474	59,511	56,929	2,582
소속기관 인건비	74,354	74,354	3,696	78,050	76,790	1,260
경찰대학인건비	17,206	17,206	1,110	18,316	18,242	74
경찰교육원 ¹⁾ 인건비	11,826	11,826	△222	11,604	10,488	1,116
중앙학교인건비	41,710	41,710	2,808	44,518	44,496	22
수사연수원인건비	3,612	3,612	0	3,612	3,654	48
계	7,767,657	7,767,657	△5,048	7,762,607	7,622,157	140,540

주: 1) 2018년 3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개칭

자료: 경찰청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7101

2) 코드명: 일반회계 7102

1-1. 경찰청 본청 내 직제 외 인력운영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경찰청 본청의 2017년말 기준 정원은 1,128명, 현원은 1,277명으로 현원이 149명 초과하였다. 본청의 초과현원 149명 중 직제 외 임시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초과인원은 58명이다.

[경찰청 본청 초과현원 현황(2017.12. 31. 기준)]

(단위: 명)

정원	현원	초과현원	
		인원수	세부내역
1,128	1,277	149	- 직제 외 임시조직 58 - 별도정원 14 - 기타(타부처 파견 등) 77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경찰청 본청내 임시조직의 조직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직제 외 조직 운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³⁾에 따라, 경찰청의 조직과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다.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5의 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직제 외로 팀·단 등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시조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2018년 현재까지 본청에 소속 된 조직 중 ‘수사구조개혁단’ 등 9개 조직을 직제 외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찰청(본청) 소속 비직제 임시조직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본청) 직제 외 운영 조직 현황]

(단위: 명)

연번	기구명	운영기간	직제 외 인력(2017년말 기준)	
1	피해자보호담당관	2015.1 ~	1	총경 1
2	경찰위원회담당관	2015.9 ~	1	총경 1
3	테러대응과	2016.11 ~	1	총경 1
4	경찰개혁추진T/F	2017.6 ~	16	경무관 1, 총경 2 경정 3, 경감이하 10
5	자치경찰T/F			
6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지원팀	2017.8 ~	5	총경 1, 경정 1, 경감 3
7	수사구조개혁단	2017.9 ~	29	경무관 2, 총경 4 경정 5, 경감이하 18
8	수사제도개편단			
9	경찰청 평창올림픽기획단	2017.1 ~ 2018.7	5	경무관 1, 총경 1 경위 2, 경사 1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 본청에 소속된 임시조직 중 ‘피해자보호담당관’, ‘경찰위원회담당관’, ‘테러대응과’ 등 3개 조직은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사실상 상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2016년 이전에 신설되었음에도 여전히 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도 이들 3개 조직에 대한 직제 반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임시조직 운영이 지속되면 경찰청 본청 소속의 직제 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청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현장 인력의 공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상시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조직을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본청에서 운영하는 임시조직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제 외 조직의 축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경찰대학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전용 집행

가. 현 황

경찰대학 인건비는 2017년 경찰대학 현원 271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183억 1,600만원 중 18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찰대학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대학 인건비	17,206	17,206	1,110	18,316	18,242	74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대학의 초과현원으로 인한 인건비의 전용집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학은 2017년 인건비 부족으로 11억 1,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고, 이와 같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집행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다.

[최근 3년간 경찰대학 인건비로의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용 금액	전용 사유
2015	1,164	정·현원 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 직급보조비 부족
2016	1,259	정·현원 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 직급보조비 부족
2017	1,110	정·현원 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찰대학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대학의 초과현원은 2015년 27명, 2016년 28명, 2017년 24명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초과현원이 24명이 발생하여 실제 과원은 2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7년 정원 247명의 11.7%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경찰대학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정원	현원	초과 현원	초과 현원 상세내역
2015	243	270	27	대학원생 22, 유학휴직 3, 국외훈련 2
2016	252	280	28	대학원생 19, 유학휴직1, 육아휴직3, 고용휴직3, 국외훈련 2
2017	247	271	24	치안대학원준비팀장 1, 치안정책연구소 1, 대학원생 20, 로스쿨교수 5, 육아휴직 1, 고용휴직(UN기구) 1 결원 : 전임교수3, 일반직2 * 초과현원(24) = 과원(29) - 결원(5)

주: 1. 치안대학원준비팀장 1명은 2018년 3월 치안대학원이 정식 개원함에 따라 정원에 포함

2. 결원이었던 전임교수 3명은 2018년에 충원 완료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인력운용은 경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은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

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원에 반영하는 등 인력운용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위탁교육과정 중인 대학원생과 전국 로스쿨에서 경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를 현재와 같이 경찰대학 현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전활동 사업¹⁾은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민·경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7년 동 사업 예산액 142억 1,900만원 중 99.2%인 14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비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생활안전활동 사업	14,219	14,219	0	0	0	14,219	14,098	85	36
협업치안 인프라강화	1,472	1,472	0	0	0	1,472	1,472	0	0
풍속사범 단속역량강화	635	635	0	0	0	635	620	0	15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관리운영	338	338	0	0	0	338	338	0	0
지하철경찰대 등 특수 지역경찰활동	799	799	0	0	0	799	798	0	1
기동순찰대 운영	1,620	1,620	0	0	0	1,620	1,618	0	2
지역경찰 현장대응 역량강화지원,환경개선	5,133	5,133	0	0	0	5,133	5,047	85	1
범죄예방 지역 사회자 문서서비스 제공	721	721	0	0	0	721	719	0	2
경미범죄심사 위원회	516	516	0	0	0	516	516	0	0
기타 범죄 예방활동지원	2,985	2,985	0	0	0	2,985	2,970	0	15

자료: 경찰청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11

2-1.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내실화 필요

가. 현황

경찰청은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동 내역사업 예산 7억 2,100만원 중에서 7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자문서비스 사업 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 상세내역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자문서비스	721	719	2	일반수용비(618), 피복비(35), 사업추진비(34), 공공요금 및 제세(32)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지역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을 시행하고 있다. 동 내역 사업에서는 범죄예방진단팀²⁾을 구성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물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에 공원·아파트·가로등 진단 2,622회, 주택·금융기관·상가·공장 등 건물유형별 진단 3,586회 등 총 1만 1,414회에 걸쳐 범죄취약요소 확인을 실시하였다.

2) [2018년 현재 범죄예방진단팀 인력규모]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원	33	17	12	11	7	8	6	31	12	9	7	12	10	10	14	15	4	218

[범죄예방진단 대상 지역 및 건물]

구분	범죄예방진단 대상	사업실적
지역	가로, 공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2,622회
건물	주택용, 아파트용, 금융업용, 상가, 사무용, 공장·창고용	3,586회
기타	명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점검, 여성불안환경(골목길) 등 점검	5,206회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경찰청은 범죄취약요소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건물주 등에게 통보하고 범죄예방조치 권고를 실시할 뿐,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같은 장소, 건물이 범죄취약요소로 확인되더라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환경 조성’이라는 동 내역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우선 동 내역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역별 범죄취약요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확인을 통해 범죄취약요소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계획에 없던 보호용 헬멧의 추가 구매 부적절

가. 현 황

경찰청은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호용 헬멧’³⁾을 구매 하였다.

경찰청은 동 사업 자산취득비 53억 2,100만원 중 5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을 이월하였다.

3) 범죄현장에서 흉기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

[2017회계연도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5,321	5,321	0	0	5,321	5,236	85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보호용 헬멧의 낙찰 차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구매를 실시함으로써 사고 이월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은 2017년 예산편성 시 보호용 헬멧 3,000개를 구매를 계획하였는데, 실제로는 2회의 계약을 통해 총 4,002개를 구매하였다. 경찰청은 먼저 당초 계획한 보호용 헬멧 3,000개를 구매하였고, 이후 낙찰차액으로 1,002개를 추가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보호용 헬멧 계약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물량(개)	단가(원)	계약일	납품일	지출액	이월액
1차	3,000	155,530	2017.6.28.	2017.9.26.	467	0
2차	1,002	164,260	2017.12.12.	2018.1.29.	165	85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2017년 예산편성 시 6억 원으로 보호용 헬멧 3,000개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조달구매 과정에서 단가가 감소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이 파악한 보호용 헬멧의 총 필요 수량은 1만 3,144개인 반면 2016년 까지 보급된 헬멧은 수량은 3,517개에 불과하여, 필요 수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보호용 헬멧 보급대상 및 수량]

(단위: 개)

대상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순찰차	합계
수량	518개소 × 4 = 2,072	1,486개소 × 2 = 2,972	24팀 × 2 = 48	4,026대 × 2 = 8,052	13,144

자료: 경찰청

[연도별 보호용 헬멧 보급 내역 및 향후 보급 계획]

(단위: 개)

대상	2016	2017	2018	2019	합계
수량	3,517	4,002	3,517	2,108	13,144

자료: 경찰청

그러나 경찰청에서 파악한 필요수량과 이를 위한 연도별 구매계획을 근거로 예산에 편성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추가구매 계약을 연말에 체결함에 따라, 연도 내에 헬멧이 납품되지 못하여 8,500만원이 이월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호용 헬멧의 필요 수량과 구입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며, 경찰공무원 및 가족, 의무경찰 등 경찰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병원은 2017년 세출예산 732억원 중 94.4%에 해당하는 691억원을 집행하였다.

3-1.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 과다 편성

가. 현 황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¹⁾은 진료수입 등 사업운영 관련 수입이며, 2017년 예산액 280억 5,100만원 중 92.7%인 260억 9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28,051	28,051	28,051	26,044	26,009	33	2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과거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9-491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은 경찰병원 입원, 외래환자 진료수입 및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 사업운영 관련 수입으로 2017년에는 28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경찰병원 전체 세입예산의 3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7회계연도 경찰병원 세입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기타	합계
세입예산	34,973	28,051	10,215	73,239
비율	47.8	38.3	13.9	100.0

자료: 경찰청

그런데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수납액은 최근 3년간 예산액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동 사업의 수납률은 92.7%로 예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20억 4,2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수납률(B/A)	차액(A-B)
2015	28,730	26,837	93.4	1,893
2016	27,467	25,648	93.4	1,819
2017	28,051	26,009	92.7	2,042

자료: 경찰청

그런데 2018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7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경영개선이 없는 한 금년에도 수납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찰병원의 주 수입 원인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세출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동 사업의 과거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2.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미흡

가. 현 황

경찰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활한 진료업무 지원을 위해 전산운영 경비 사업²⁾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동 사업 예산액 28억 7,800만원 중 2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전산운영 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산운영 경비 사업	2,878	2,878	0	2,878	2,347	531
임차료	1,790	1,790	△487	1,303	926	377
연구개발비	0	0	487	487	487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병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의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발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런데 첫해부터 사업이 일시중단 되는 등 차질이 빚어져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연구개발비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 코드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331-511

2016년에 비로소 사업 추진이 재개되어 전년도 이월액 중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 경찰병원은 2017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자, 완료대금 지급을 위해 전산운영경비 사업의 임차료³⁾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연구개발비로 4억 8,7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다.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및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추진 상세내역(날짜)
2015	3,780	3,780	0	3,780	0	조달청 분리발주 추진(2015. 7) 1·2차 단일응찰로 유찰(2015. 9) 비위 발견으로 사업 중단 및 경찰청 종합감사(2015. 8~2015. 9) 계약 조달 공고 및 예산 이월(2015. 12)
2016	0	3,780	3,196	0	584	구축사업 계약(2016. 2) 사업 미완료에 따른 잔액 불용(2016. 12)
2017	0	487	487	0	0	검사검수 완료 및 사업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2017. 12)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원칙적으로 재이월이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병원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측되었다면, 이를 대비하여 2017년 예산에 관련 비용 편성을 검토하여야 했다. 설사 예측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출소요 발생을 이유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비목으로 전용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병원은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구축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III

개별 사업 분석

1

대테러 상황관리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실효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경찰청은 경찰특공대를 육성·운영함으로써 테러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테러 상황관리 사업¹⁾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경찰특공대는 2017년 신설된 경기북부 특공대를 포함하여 총 8개이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 164억 8,400만원 중 146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테러 상황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테러 상황관리	16,457	16,457	27	0	16,484	14,609	1,191	684
피복비	1,960	1,960	0	0	1,960	1,696	0	265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경찰청의 방탄방검복의 낙찰차액 발생 규모가 과다하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3134-311

경찰청은 2016년부터 작전부대 방탄방검복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1년 까지 총 9,869착을 구매하여 112타격대와 의경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연도별 구매·보급 내역 및 향후 계획]

(단위: 착)

보급대상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12타격대	1,823	1,823	179	0	0	0	3,825
해안경계부대	0	0	1,051	0	0	0	1,051
검문소	0	0	163	0	0	0	163
의경대	0	0	430	1,823	1,157		3,410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	0	0	0	0	666	754	1,420
합 계	1,823	1,823	1,823	1,823	1,823	754	9,869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작전부대 방탄방검복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차액의 비중, 즉 낙찰률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작전부대 방탄방검복의 낙찰차액 규모는 3억 1,400만원이며, 낙찰률은 81.2%이다.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구매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내역	구입 개수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낙찰차액	낙찰률
피복비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1,823벌	1,669	1,355	0	314	81.2

주: 낙찰차액 4,900만원은 인천공항 제2공항공기동대(2017년 12월 창설) 피복비 지원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6년 낙찰액을 기준으로 2017년 방탄방검복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규모는 적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 방탄방검복 구매 시 예정가격은 95만원 이었는데, 실제로는 91만원 수준으로 낙찰되었다. 경찰청은 2017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량을 구매할 예정이었으므로, 2016년 낙찰액 수준인 91만원 단가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7년 방탄방검복 납품단가가 약 74만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에도 2017년과 동일한 단가 91만원을 기준으로 방탄방검복 구매예산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업체간 경쟁으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할 경우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은 2017년 구매단가 및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파차단장치는 식별된 드론에 대해 전파를 방사하여 이를 무력화함으로써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이다. 전파차단장치 구입 예산은 2017년 신규반영된 것으로 예산액 1억 2,8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전파차단장치 구매 내역]

(단위: 백만원, 대)

명칭	예산액	집행액	구매단가	구매대수
전파차단장치	128	107	35.7	3

자료: 경찰청

전파차단장치는 ‘식별된’ 드론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이 장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드론 식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재까지 드론 식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단지 육안 식별에 의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성능이 입증되어 상용화에 이른 드론 식별장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산탄총에 의존하여 드론을 제거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파차단장치 도입으로 드론 테러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식별장치 없이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전파차단장치의 드론 테러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2021년 완료를 목표로 드론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대로 드론 테러 대응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 이전에도 전파차단장치의 실효성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비관리 유지 사업¹⁾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구매·관리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비’와 구매한 장비의 부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관리유지비’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124억 800만원 중 10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장비관리 유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 유지	11,776	11,776	632	0	12,408	10,237	2,118	53
장비구입비	5,441	5,441	416	0	5,857	4,357	1,492	7
관리유지비	6,335	6,335	216	0	6,551	5,880	626	46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동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고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이월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7년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17.1%에 달한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4231-314

[연도별 장비관리 유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4	11,280	88	11,368	11,196	137	35
2015	11,163	137	11,300	10,708	555	37
2016	12,066	555	12,621	11,939	632	50
2017	11,776	632	12,408	10,237	2,118	53

경찰청은 2017년 동 사업에서 총 4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5건의 계약에서 이월이 발생하였다. 2017년 사고이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비 구입비에서 8건(14억 9,212만원), 장비관리유지비에서 7건(6억 2,610만원)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월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이월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특히 이 중 4건은 연말이 되어서야 계약이 체결되었다.

경찰청은 총기 및 관련 부품의 경우 수출국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휴대용 탐색등 구입의 경우에는 계약의 뒤 절차를 4분기에 시작하는 등 외부적 요인이 없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체되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을 관행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찰청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고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비관리 유지 사업의 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	이월액	계약일	이월사유
장비구입비	경찰담요	140	5.31	사업자의 자재 확보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체
	판초우의	46	6. 9	검사불합격으로 인한 납기지연
	38권총	319	7.20	미국내 수출승인 지연
	경찰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사업(자재)	155	10.30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2회)
	경찰청 LED입간판	122	11.20	검사불합격으로 인한 납기지연
	26인치 제논탐조등	34	11.29	상반기 계약업체와 구매취소 (2017. 6.) 후 재구매
	휴대용 탐색등	415	12.26	경찰청의 사업추진 지연
	K2소총 및 K3기관총	261	12.27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 소송 발생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소계		1,492		
장비관리 유지비	권총용 부품	45	7.20	미국내 수출승인 지연
	경찰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사업	45	10.30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2회)
	윤활 방청유	15	11.16	경찰청의 사업추진 지연
	총기용 수리부품 (M계열)	9	11.16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 소송 발생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경찰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사업 감리	15	12.19	단독응찰로 인한 본 사업 유찰 (2회)
	총기용 수리부품 (K계열)	37	12.27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 소송 발생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노후최루탄 폐기처분	460	12.30	국회 결산지적(2017. 8.)에 따른 사업추진 및 유찰로 계약지연
소계		626		
총계		2,118		

자료: 경찰청

가. 현 황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¹⁾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은 디지털증거의 확보 및 증거분석·복구능력 역량 강화 등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7년 디지털증거분석실 표준화 및 시설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 4억 8,5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	6,208	6,208	0	0	6,208	5,760	0	448
디지털증거분석실 표준화 및 시설개선	485	485	0	0	485	484	0	1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매년 디지털증거분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우선 각 지방청에 총 26명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증원하고 8개 지방청(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남·경북)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하였고, 2017년에는 5개 지방청(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계획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3-511

[연도별 디지털증거분석 수요(의뢰) 건수]

(단위: 건)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11,200	14,899	24,370	32,281	36,060

자료: 경찰청

그런데 2016년과 2017년의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16년에는 경우, 당초 8개 지방청(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남·경북)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하였으나, 이 중 경북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 개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해당 금액을 부산청 및 경기남부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 개선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2017년에는 5개 지방청(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주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을 실시하지 않은 대신 경남청 시설개선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실시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 개선 관련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지방청	당초	집행	세부내역
2016	부산청	105.5	125.5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대구청	97	94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인천청	97	97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광주청	91	81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경기남부청	123	210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충북청	97	95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전남청	92.5	97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경북청	97	0	-
	합계	800	799.5	
2017	대전청	97	97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울산청	97	97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강원청	97	96	접수실, 참여실, 분석실 등 구축 개선
	경남청	97	194	디지털 증거분석실 신규구축
	제주청	97	0	-
	합계	485	484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16년 당시 청사신축이 진행 중이던 경북청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확보할 예정이었고, 당시 부산청의 시설 개선 수요가 당초 예측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존 디지털증거분석실 공간이 협소함에도 경남청에 2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부득이 인접 공간 확보를 통한 시설 개선이 아닌 신축(경남청 본관·별관 외 별도의 공간에 가건물 시설공사)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청의 경우에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신축이 진행 중이고 신청사에 필요한 규모의 디지털증거분석실을 확보할 예정이므로, 경찰청은 현 청사의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의 신축은 2012년에, 제주지방경찰청은 2015년에 결정되었으므로, 예산 편성시에는 기존 청사의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선할 필요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청과 제주청의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부산청, 경남청 개선 공사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청은 예산 편성시에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집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의적인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2018년 7월까지 안동시로 신축이전을 완료 예정이다. 또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주청 신축 비용반영(기본조사설계비 4억 7,100만원)하여, 2016년 10월 부지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5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다.

가. 현 황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편의 확보와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억제 등을 위해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법무부에 송부하고 있다.

경찰청은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부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93,746	93,746	770	0	94,516	90,487	2,840	1,188
공공요금 및 제세	119	119	0	0	119	119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성폭력 범죄자 정보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 방식은 공공요금 지출증가와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달 방식 변경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받은 신상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정보를 추가로 송달해야한다.²⁾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2-312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신상정보 송달방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등기우편으로 정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매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을 편성하고 있다.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집행규모 역시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886	37,082	47,547
우편송달료	72	98	119

자료: 경찰청

그런데 법률에 규정된 기본신상정보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총 7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단한 신상정보 송달을 위해 현재와 같은 등기우편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신상정보 송달은 부처간 정보공유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전자문서를 통한 부처간 문서 전달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비공개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한 성폭력 신상정보 송달을 지속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다만, 성폭력 신상정보의 등기우편 송달은 시행령에 명기된 방식이므로,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가. 현 황

헬기운용 및 현대화 사업¹⁾은 헬기를 치안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헬기 구입 및 보유 헬기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은 42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억 9,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5억 9,8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43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헬기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헬기운용 및 현대화	42,400	42,400	1,198	0	43,598	43,160	28	410
시설장비 유지비	6,991	6,991	914	△3	7,902	7,763	0	14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헬기 정비의뢰를 이전 연도에 실시하고 해당 정비 대금을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치안업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19대의 헬기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노후헬기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4232-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자체 정비능력을 벗어난 외주정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헬기 기종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와 체결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헬기 정비 관련 사전 단가계약 대상 품목은 정비노임에만 한정되며, 헬기 부품은 정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의 헬기 정비 단가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비용역 단가계약 현황]

외주정비업체	정비기종	시간당 정비노임 단가	계약기간
(주)유아이헬리콥터	미국산 헬기(8대) 유럽산 헬기(3대)	77,300원	2016. 7. 15. ~ 2017. 7. 14.
(주)LG상사	러시아산 헬기(3대)	107,900원	2016. 7. 15. ~ 2017. 7. 14.
(주)한국항공우주산업	국내산 헬기(3대)	160,784원	2015. 9. 1. ~ 2016. 8. 31.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헬기 정비 단가계약을 근거로 정비를 의뢰하고, 정비완료 후 정비업체가 비용을 청구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이 2017년에 헬기 정비 대금으로 지급한 총 83건 중 2건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정비의뢰를 실시한 것이다.

2)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지출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계약단가와 함께 예정수량 또는 총액한도를 명시하여 체결한다.

[이전 연도 정비 의뢰 후 2017년 정비대금 지급 사례]

(단위: 천원)

정비의뢰일	정비완료일	대 금	내 역
2015.11. 5.	2017. 8.29.	69,723	정비(오버홀) 및 외자구매 부품비
2016. 5.11.	2017. 10.31.	91,800	정비(구명보트 장착) 및 외자구매 부품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헬기 정비 과정에서 결함요소가 추가로 발견되면 당초 계획보다 정비기간이 연장되며, 경우에 따라 정비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전 연도에 헬기 정비의뢰를 실시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해당 정비 대금을 지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단가계약에는 노임단가만 포함되고 부품단가는 제외되므로, 정비에 소요되는 해외 부품 단가가 정비기간 중 변동될 경우 상승된 부품단가가 적용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헬기부품 수급 기간의 단축 등 정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간의 헬기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비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중앙경찰학교는 신임순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숙소, 피복 및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신임순경교육 사업¹⁾의 2017년 당초 예산액은 204억 7,7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으로 7억 7,7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5억 5,300만원을 수령하여 예산현액은 202억 5,300만원이다. 이 중 20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 불용하였다.

동 사업에서 예비비를 배정받은 항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일반용역비이다.

[2017회계연도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임순경교육 사업	20,477	20,477	△777	553	20,253	20,123	130
일반수용비	2,216	2,216	△320	94	1,989	1,989	0
공공요금 및 제세	253	253	161	11	425	425	0
피복비	753	753	36	157	945	815	130
급량비	5,735	5,735	△1,652	233	4,315	4,315	0
특근매식비	3,396	3,396	△728	0	2,668	2,668	0
임차료	47	47	67	0	114	114	0
유류비	318	318	859	0	1,178	1,178	0
시설장비유지비	162	162	952	0	1,115	1,115	0
일반용역비	1,434	1,434	△182	58	1,310	1,310	0
관리용역비	2,249	2,249	30	0	2,280	2,280	0

자료: 경찰청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4133-311

나. 분석의견

예비비를 신청할 때에는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규모의 예비비를 배정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2017년 신입순경 교육인원을 5,240명으로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4,576명을 연간 교육인원으로 결정하였다. 경찰청이 이후 1,104명을 추가채용하기로 결정하여 중앙경찰학교의 2017년 신입순경 교육대상자는 총 5,680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한 5,240명보다 440명이 추가된 규모이다. 이에 따라 추가된 교육생에게 숙소, 피복 및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앙경찰학교는 당초 계획대비 추가인원인 440명이 아닌, 1,104명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로 신청하여 배정받았다.

[신입순경 교육 대상자 인원 변동 내역]

구분	당초 예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인원	5,240명	4,576명(-664명)	5,680명(+440명)

이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은 비목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경찰학교는 이 중 일부를 전용 또는 세목조정 집행하고 일부는 불용하였다.

그런데 예비비 배정 후 해당 비목의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억 1,100만원, 급량비에서 8억 5,00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목조정되었고, 급량비에서 유류비로 5억 2,500만원이 세목조정되었다.

[예비비 배정 후 해당 비목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금액	이전용 등 주요내역
일반수용비	△320	수사연수원 강사료(170), 시설장비유지비(111) 등
급량비	△1,592	신입경찰관 채용경비(287), 시설장비유지비(850), 유류비(525) 등
일반용역비	△182	공공요금(161) 등

주: 해당 비목에 대한 예비비 배정일자는 2017. 9. 4이다.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의 건물이 노후하여 원활한 교육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유류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한파 기간이 길었고 난방장치 노후화로 인하여 연료소요량 증가폭이 예산을 초과하여 부득이 세목조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한다.

한파로 인한 유류비는 예산 편성 시 향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전에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과다배정으로 발생한 잔액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이전용 등으로 예산현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불용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예비비 신청 규모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예비비 신청에 앞서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비비를 배정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찰청의 미수채권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조 270억원이며, 2014년 1조 1,809억원에 비하여 1539억원 감소하였다. 2013년 대비 2014년에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금액의 증가라기보다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미수제재금수익의 확대에 기인하므로 2014년을 기준으로 증감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4~201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2017년에 5.2%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청은 대손충당금을 4년 평균 결손율(불납결손액/미수납액)을 적용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연도별 경찰청 미수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3	2014(a)	2015	2016	2017(b)	증감(b-a)
미수채권(c)	55,109	1,180,892	1,136,696	1,017,893	1,027,029	△153,863
대손충당금(d)	819	139,038	143,437	118,135	53,260	△85,778
잔액(e=c-d)	54,290	1,041,854	993,259	899,758	973,769	△68,085
대손충당금 설정률(d/c)	1.5	11.8	12.6	11.6	5.2	△6.6

주: 2013년 대비 2014년 미수채권 급증원인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조의 개정에 따라 미수제재금수익과 관련하여 회계변경누적이익 1조 1,597억원을 기초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하였고,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변경누적손실 1,270억원을 기초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함에 기인함.

자료: 경찰청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압류채권과 관련된 압류물의 가치 등에 대한 검토와 선순위 담보물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미수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2017년 말 기준 미수채권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 미수채권 1조 270억원 중 미수제재금수익이 1조 224억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대손충당금 설정액 532억 6,000만원 중 99.8%인 531억 6,200만원을 미수제재금수익과 관련하여 설정하고 있다.

경찰청이 전체 미수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수제재금수익 1조 224억원에 대하여 5.2%인 531억 6,2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친 사유는 최근 4년간 발생한 평균 불납결손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을 채택한 사유는 감사원이 2015년 감사시에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말고 1년 경과된 비압류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런데, 압류채권의 주된 압류물인 자동차 등은 내용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압류채권과 관련된 압류물의 가치 등에 대한 검토와 선순위 담보물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회수가능가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말 경찰청 미수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 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 역제공수익	미수이자 수익	미수기타 수익	기타의 미수금	합계
미수 채권	금액	1,022,355	3,514	0	1,138	21	1,027,029
	비중	99.5	0.3	0.0	0.1	0.0	100.0
대손 충당금	금액	53,162	37	0	59	1	53,260
	비중	99.8	0.1	0.0	0.1	0.0	100.0
잔액		969,193	3,477	0	1,079	20	973,769

자료: 경찰청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도로교통공단출연¹⁾ 사업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 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관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지차 보전²⁾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 1,010억 3,800만원을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전액 교부하였다.

[2017회계연도 도로교통공단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도로교통공단출연	99,766	101,038	0	0	101,038	101,038	0	0

자료: 경찰청

8-1.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필요

가. 현 황

교통안전연구개발 사업은 경찰청 소관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교통교육 프로그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일반회계 1331-314

2) 수지차 보전 방식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의미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해당 사업은 기본연구과제, 학술교류지원, 교통안전연구용역, 정책기술연구개발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7년도에 기본연구과제 5억 6,500만원, 학술교류지원 2억 900만원, 교통안전연구용역 11억 7,400만원, 정책기술연구개발 17억 2,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교통안전연구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본연구과제	683	447	434	209	565
학술교류지원	153	148	207	278	209
교통안전연구용역	1,249	1,055	974	1,055	1,174
정책기술연구개발	2,191	2,043	1,900	1,860	1,722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동 내역사업을 기관 소관 기관인 교통과학연구원의 부서인 첨단공학연구처, 정책연구처, 시설장비연구처, 미래전략연구처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외부용역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은 기관 내부 소속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추진하는 기본연구과제 연구개발 사업 방식을 경찰청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방식인 외부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의 기본연구과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2015년 ‘교통안전시설이 속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12건, 2017년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방안’ 등 10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외부 공모 절차 없이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기관을 통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기본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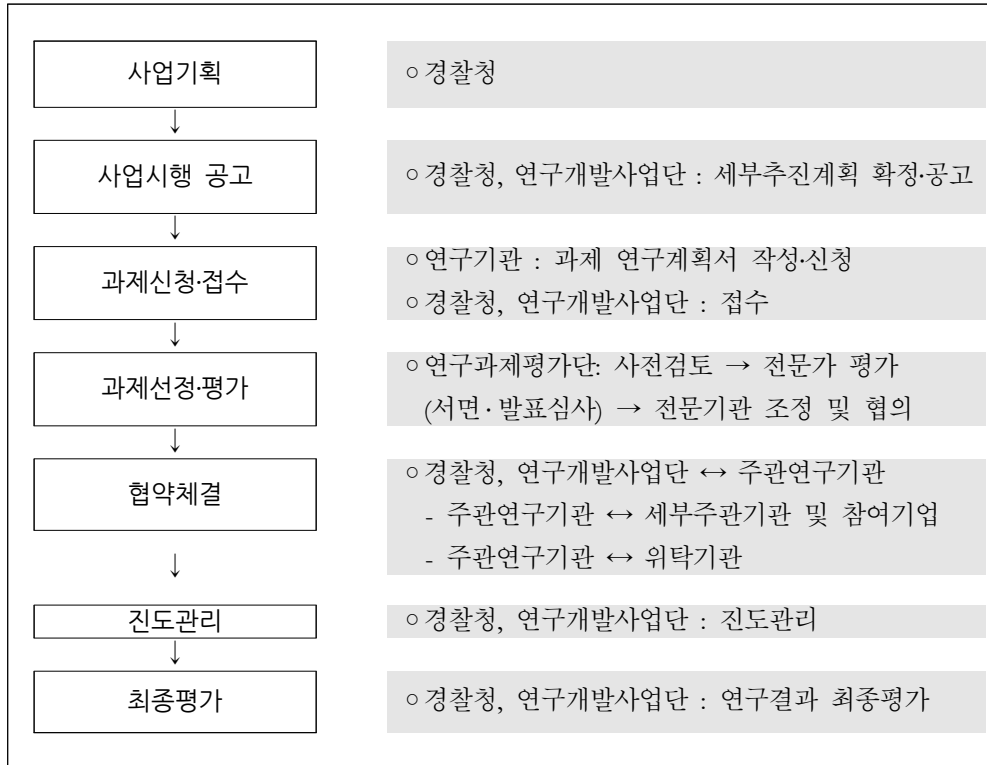
연도	연구과제명	분야	총 연구예산	연구 기간	주관 기관
2015	‘교통안전시설이 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12건	기본연구 과제	434	1.1~ 12.31	자체
2016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 등 11건	기본연구 과제	209	1.1~ 12.31	
2017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방안’ 등 10건	기본연구 과제	565	1.1~ 12.31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출연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같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도로교통 관련 민간부문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찰청의 연구개발 절차와 같이 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인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R&D)(4235-611)은 경찰청을 통해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서면·발표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하여 실제 연구개발을 추진할 주관·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추진 과정]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의 사업시행절차를 살펴보면, 경찰청이 사업 기획을 하고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공고하여 기업, 연구소,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받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하여 주관·참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주관·참여기관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동 사업의 경우에도 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교통교육 프로그램, 교통 신호제어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외부 공모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소와 도로교통 관련 분야 대학교, 민간연구기관 등이 경쟁하여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도로교통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동 내역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기관에 직접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경찰청의 일반 연구개발 사업수행체계와 같이 공모를 통하여 주관·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8-2. 순천교육장의 매각 지연 부적정

가. 현 황

도로교통공단은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도로교통 교육장인 순천교육장을 2017년 2월에 광양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천교육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다.

기존 순천교육장은 전남 순천시 가곡4길에 위치하였으며 면적은 934.99㎡으로 2016년 12월 1차 감정평가액은 평균 8억 8,554만원이었으나, 2017년 12월 2차 감정평가액은 8억 3,632만원으로 2017년 말 기준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2018년 8월에 매각이 이루어져 매각에 약 1년 8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순천교육장 매각진행 현황]

(단위: 백만원)

위치	면적(㎡)	매각예상가	실 매각가	기존 용도
전남 순천시 가곡4길	934.99	836	매각 진행중	교육장

자료: 도로교통공단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부터 순천교육장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 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각이 지연된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매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순천교육장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16~2017년도까지 순천교육장의 공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20일

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대학로 11

8억 8,500만원의 구매예정가로 구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이후로 2017년 말까지 총 13번의 유찰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년 8월에서야 매각이 이루어져 자체수입 확보가 지연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순천교육장 매각 현황(2016~2017년)]

(단위: 백만원)

공고일시	구매일시	낙찰(유찰) 일시	결과	구매예정가
2016. 12. 8	2016. 12. 20	2016. 12. 23	유찰	885
2017. 1. 5	2017. 1. 31	2017. 2. 3	유찰	885
2017. 2. 9	2017. 2. 28	2017. 3. 3	유찰	885
2017. 3. 9	2017. 3. 28	2017. 3. 31	유찰	885
2017. 4. 6	2017. 4. 25	2017. 4. 28	유찰	885
2017. 5. 11	2017. 5. 30	2017. 5. 31	유찰	885
2017. 6. 8	2017. 6. 27	2017. 6. 30	유찰	885
2017. 7. 6	2017. 7. 25	2017. 7. 28	유찰	885
2017. 8. 3	2017. 8. 22	2017. 8. 25	유찰	885
2017. 9. 7	2017. 9. 26	2017. 9. 29	유찰	885
2017. 10. 12	2017. 10. 31	2017. 11. 3	유찰	885
2017. 11. 9	2017. 11. 28	2017. 12. 1	유찰	885
2017. 12. 7	2017. 12. 26	2017. 12. 29	유찰	836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7년 동안 이미 신설된 광양교육장에서 도로교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순천교육장은 도로교통 교육장의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활용용도가 없이 방치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순천교육장이 순천시 중심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주도로와 이격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리적으로 낙후되어 지역민에게 비선호 지역인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은 활용용도가 없어진 자산의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체수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8-3. 임차보증금 자체 수입 편성 필요

가. 현 황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 시험, 도로교통 교육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사를 두고,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사택을 임차(전세)로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2017년도 사택 또는 청사의 임차보증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이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수납한 반환금이 2017년 5억 2,100만원이며, 신규 및 전세 재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임차보증금 지급금이 1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도별 임차보증금 반환금 및 지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반환금	415	949	1,615	934	521
지급금	350	1,882	2,117	1,637	1,600

자료: 도로교통공단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은 예산 총계주의와 수지차 보전⁴⁾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택 또는 청사의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자체 수입에, 지급금은 지출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택 또는 청사의 전세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반환금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신규 전세계약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도로교통공단의 신규 전세 계약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남구 송의동 248동 107호’의 경우 전체 계약금 7,800만원 중 6,600만원

4)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을 기존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분 1,200만원만을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원주시 단구동 미소지움 104동 301호’, ‘원주시 단구동 유승 105동 1506호’의 경우에도 일부는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신규 전세 계약(재계약 포함) 현황]

(단위: 백만원)

위치	계약기간	계약금	기존 전세금	추가 지급금	용도
원주시 반곡동 LH 1106동 1703호	2017. 3. 21 ~ 2019. 3. 20	230	0	230	사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청솔 101동 310호	2017. 4. 3 ~ 2019. 4. 2	79	0	79	사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청솔 205동 1403호	2017. 4. 3 ~ 2019. 4. 2	79	0	79	사택
제주시 노형동 부영 204동 702호	2017. 4. 25 ~ 2018. 4. 24	170	140	30	사택
원주시 반곡동 모아엘가 704동 701호	2017. 7. 27 ~ 2019. 7. 26	200	0	200	사택
인천 남구 송의동 248동 107호	2017. 12. 20 ~ 2019. 12. 19	78	66	12	사택
울산시 중구 금호타운 101동 403호	2017. 12. 25 ~ 2019. 12. 24	160	140	20	사택
태백시 황지동 하이츠 107동 1103호	2015. 12. 30 ~ 2017. 12. 29	100	70	30	사택
원주시 단구동 미소지움 104동 301호	2017. 11. 20 ~ 2019. 11. 19	200	180	20	사택
원주시 단구동 유승 105동 1506호	2017. 11. 30 ~ 2019. 11. 29	190	170	20	사택
광양시 광양읍 대림A 106동 1713호	2017. 12. 8 ~ 2019. 12. 7	45	35	10	사택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85 104동 2601호	2017. 12. 27 ~ 2019. 12. 26	260	0	260	사택
나주시 송월18길 101동 1404호	2017. 12. 29 ~ 2019. 12. 28	100	0	100	사택

자료: 도로교통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국가재정법」 제17조⁵⁾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수입대체경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현물 출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 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5) 「국가재정법」 제17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⁶⁾에 따르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지침에 따라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공단의 사택이나 청사의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총계가 아닌 순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 심사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사택이나 청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자체수입에 편성하고, 해당 연도에 신규로 계약한 사택이나 청사의 지급금은 지출에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의 현황을 총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9

□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별첨)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
○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42억 5,200만원 (351.4%)이 증가한 5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3억 4,500만원 (36.0%)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9,288	1,691	1,691	5,943	4,252	△3,34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1,381억 2,300만원 (124.6%)이 증가한 5,61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76억 3,000만원(12.5%)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621,992	561,499	561,499	699,622	138,123	77,6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억 9,100만원이며, 59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91	1,691	1,691	5,943	5,943	0	0.0	1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121억 9,6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6,99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61,499	561,499	712,196	699,622	199	12,375	98.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산은 5,237억 2,900만원, 부채는 26억 9,900만원으로 순자산은 5,210억 2,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41억 900만원(2.8%)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39억 6,700만원, 일반유형자산 5,087억 9,700만원, 무형자산 64억 5,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5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주로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52억 3,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3억 3,900만원(98.5%)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2억 3,500만원, 장기차입부채 12억 5,300만원, 장기충당부채 2억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9억 5,500만원 증가, 장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3억 3,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23,729	509,620	14,109	2.8
Ⅰ. 유동자산	3,967	4,262	△295	△6.9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508,797	493,559	15,238	3.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6,452	7,646	△1,194	△15.6
Ⅵ. 기타비유동자산	4,513	4,152	361	8.7
부 채	2,699	1,360	1,339	98.5
Ⅰ. 유동부채	1,235	280	955	341.1
Ⅱ. 장기차입부채	1,253	914	339	37.1
Ⅲ. 장기충당부채	211	167	44	26.3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521,029	508,260	12,770	2.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252억 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4,570억 4,700만원, 관리운영비 2,723억 9,800만원, 비배분비용 15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58억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08억 3,400만원(10.8%) 증가한 7,252억 4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대선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639억 5,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 관련 순원가이며, 4,570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942억 6,300만원과 경비 781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9억 8,500만원과 기타비용 5억 8,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기타수익 57억 6,100만원과 재화및용역제공수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57,047	393,092	63,955	16.3
II. 관리운영비	272,398	261,032	11,366	4.4
III. 비배분비용	1,570	11,899	△10,329	△86.8
IV. 비배분수익	5,810	11,654	△5,844	△5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25,204	654,370	70,834	10.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25,204	654,370	70,834	10.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5,082억 6,000만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5,210억 2,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7억 6,900만원(2.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708억 3,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290억 7,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852억 1,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7,371억 9,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9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7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08,260	480,804	27,456	5.7
II. 재정운영결과	725,204	654,370	70,834	10.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37,196	651,977	85,219	13.1
IV. 조정항목	777	29,848	△29,071	△97.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21,029	508,260	12,769	2.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② 재외선거관리 사업, ③ 정치관계법규관리 및 선진화 사업, ④ 선거연수원 운영 사업 등이 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과도한 예산편성 및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억 8,500만원이 감액(1,803억 5,500만원→1,800억 7,000만원)되었고,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실제 업무소요를 감안하지 않은 업무보조원 고용, 과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재외선거 투표자수 과다 예측의 사유로 1억 9,400만원이 감액(151억 1,700만원→149억 2,300만원)되었다. 정치관계법규관리 및 선진화 사업의 민·형사소송 지원경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200만원이 감액(5억 2,800만원→5억 1,600만원)되었고, 선거연수원 운영 사업은 교육용 컴퓨터 단가를 조달청 평균단가로 조정하여 1,000만원이 감액(14억 2,900만원→14억 1,900만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②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③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④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⑥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⑦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 역량 강화**, ⑧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⑨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반복된 사례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사업을 최근 4년간 매년 각기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해왔다.

둘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79억 4,800만원을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사업관리 및 집행통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대통령선거관리 사업¹⁾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2,084억 9,300만원 중 99.2%인 2,06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900만원을 이월하고, 15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 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통령 선거관리	180,070	180,070	5,443	22,980	208,493	206,780	199	1,514
선거관리일반	22,792	22,792	4,943	1,622	29,357	29,352	0	5
선거운동관리	22,282	22,282	△3,196	10,558	29,644	29,256	0	388
사전투표관리	34,076	34,076	2,135	7,000	43,211	42,902	0	309
선상투표관리	687	687	0	0	687	487	199	1
투표관리	46,623	46,623	3,865	3,800	53,988	53,716	0	272
개표관리	8,196	8,196	4,978	0	13,474	13,423	0	50
계도·홍보	12,577	12,577	1,200	0	13,777	13,565	0	212
위법행위예방단속	30,092	30,092	△7,850	0	22,243	22,018	0	225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398	398	△18	0	380	336	0	44
인터넷선거제도심의	237	237	28	0	265	264	0	1
선거방송토론관리	521	521	33	0	554	552	0	2
정책선거추진	1,410	1,410	△714	0	696	692	0	4
선거여론조사심의	178	178	39	0	217	216	0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0

대통령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9일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수, 사전투표 규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초 예측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9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다.

1-1. 예비비 배정 전 해당 비목 예산의 타 비목 세목조정

가. 현 황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1,800억 7,0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등으로 284억 2,300만원이 증가한 2,084억 9,3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229억 8,000만원 중 93%에 해당하는 214억 2,2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집행하였다.

[대통령 선거관리 사업 공공요금및제세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내역별 집행액
30,463	△16,932 11,834	21,422	46,787	46,694	93	관외 사전투표 회송요금	13,475
						책자형선거공보 발송료	16,702
						투표안내문발송료	7,678
						기타 우편요금 등	8,83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사전투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 배정에 앞서 이를 타 비목으로 세목조정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수와 사전투표 규모가 당초 예측을 초과하여 책자형선거공보 발송료, 관외 사전투표 회송요금²⁾을 비롯한 공공요금및제세(210-02)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예비비의 배정·집행이 불가피하였다. 실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수는 15인으로 제18대 후보자 수 7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사전투표율은 26.1%로 직전 선거인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2%보다 증가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 내 타 비목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 사업의 공공요금 168억원을 우선 타 비목으로 세목조정 하고, 이후에 공공요금 부족을 이유로 예비비를 배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공요금은 선거종료 후 집행되므로 우선 집행이 필요한 투개표사무원 수당·사례금 등으로 세목 조정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비비 배정·집행 전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조정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월	금액	변경비목(금액)	주요 집행내역
3	24,497	일반수용비(1,747), 특근매식비(22,000), 시설장비유지비(250), 기타운영비(500)	투표사무관계자 식비 등
4	6,207,552	일반수용비(5,448,944), 급식비(10,000), 특근매식비(563,525), 임차료(183,783), 기타운영비(1,300)	투개표사무관계자 수당, 사례금 등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투표관리관(사무원) 추가 사례금
5	10,586,413	일반수용비(9,658,235), 급식비(7,156), 특근매식비(611,940), 임차료(290,288), 유류비(2,070), 시설장비유지비(100), 기타운영비(16,624)	간사·서기 사례금 투표소물품세트 제작 투표참관인 수당 등
합계	16,818,462	-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한 예비비는 2017년 6월부터 집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으로, 관외선거인이 투표한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마감 후 등기우편으로 해당 선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그러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017년 4월 16일에 마감되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은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이 시급한 비목으로의 세목조정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비목에서 이를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할 경우, 우선 해당 비목의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관리 사업에서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였다.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는 2012년 7월 구축된 선거법령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데이터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예산액	집행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업체
182	219	2017. 7. ~ 2017. 12	수의	(주)젠솔소프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령시스템은 PC버전의 ‘선거법령정보’, 모바일 앱 ‘선거법령’ 등을 통해 일반에게 선거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해 왔다.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관리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선거사무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거정보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선거정보시스템구축³⁾ 사업, 또는 유권자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규안내서비스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관계법규관리및선진화⁴⁾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을 최근 4년간 매년 각기 다른 사업에, 더욱이 선거정보화 사업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해왔다.

[최근 4년간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편성 및 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세부사업	주요 내용	집행액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
2015	정치관계법선진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
2016	정치관계법규안내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
2017	대통령선거관리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
		스마트선거법령정보 시스템 고도화	219

주: 선거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최근 4년간 전액 집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선거 유무에 따라 세부사업의 규모가 크게 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같은 내용의 사업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세부사업에 매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코드명: 일반회계 7136-523

4) 코드명: 일반회계 1135-310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스마트 선거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¹⁾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한국선거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 전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82억 8,600만원 중 96.3%에 해당하는 79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8,286	8,286	0	0	8,286	7,982	0	30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	362	362	0	0	362	352	0	10
선거관계자 역량 강화	628	628	0	0	628	592	0	36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338	338	0	0	338	336	0	2
ODA 기반조성사업	1,540	1,540	0	0	1,540	1,419	0	121
ODA 일반운영비	1,450	1,450	0	0	1,450	1,384	0	66
DR공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931	931	0	0	931	917	0	14
엘살바도르공화국 선거 ICT 선진화 지원 사업	1,772	1,772	0	0	1,772	1,755	0	17
피지공화국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826	826	0	0	826	803	0	23
에과도르선거위원회 역량강화사업	139	139	0	0	139	129	0	1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ICT 선거역량 강화지원 사업	300	300	0	0	300	295	0	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3-334

나. 분석의견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원 대상국가의 ICT 인프라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선거역량 강화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이행기에 있는 이른바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선거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등 5개국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선거 역량강화 및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ICT 기반 선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대상 국가 선거관계자 초청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7년 신규 내역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 장비)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 관리 역량강화	931	· ICT 기반 선거 역량강화를 위한 선거관계자 연수 · 데이터센터 강화를 위한 출장 등
엘살바도르 선거 ICT 선진화 지원	1,772	· 선거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출장 등 · 선관위 관리요원 대상 운영관리 교육 및 선거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지원 (개표결과전송단말기 1,800대)
피지공화국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 관리 역량 강화	826	· 피지 ICT 인프라 취약점 개선을 위한 출장 · 피지 선관위 선거 운영을 위한 ICT 연수 및 기술 지원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50대)
에콰도르 선거역량 강화	139	· 에콰도르 대선 및 총선 선거 ICT 기술 지원을 위한 출장 ¹⁾
우즈베키스탄 ICT 선거역량 강화지원	300	· 우즈베키스탄 선관위 ICT 전문가 초청 교육 · 선거정보시스템 개발 및 통한선거인명부 구축 등을 위한 출장(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주: 1) 에콰도르의 경우는 2016년에 개표결과전송단말기 1,850대를 지원하였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CT 기반 선거방식을 적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전기, 통신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년에 지원을 실시한 국가들의 ICT 관련 인프라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²⁾이 발표한 2017년 ICT발전지수³⁾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95위, 에콰도르 97위, 피지공화국 107위, 엘살바도르 119위, 콩고 민주공화국 171위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통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2017년 지원 대상 5개국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엘살바도르에 ‘개표결과 전송단말기’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전력이나 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8년 이라크에서는 한국산 ‘광학 판독개표기’와 ‘개표결과 전송단말기’를 이용한 개표 및 집계방식과 관련하여, 수신 불량이나 전력 부족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원 대상국가의 ICT 인프라 등 현지 실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동 사업 예산 현액 82억 8,600만원의 95.9%에 해당하는 79억 4,800만원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8,286	8,286	0	0	8,286	7,982	0	304
민간경상보조	7,948	7,948	0	0	7,948	7,647	0	30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유엔 산하기구로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3) 각 국가의 ICT 발전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국가간 ICT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4년에 창설된 각국 선거기관간 협의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주요 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2017년에는 보조금이 전체 재원의 92.7%일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자원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보조금	회원국부담 ¹⁾	합계
2015	1,314	1,871	3,185
2016	3,309	81	3,390
2017	7,948	225	8,173

주: 1)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를 개최한 회원국에서 부담하는 회의 운영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사업 및 운영재원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주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에 대한 사업관리 및 집행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2017년 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즉,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중앙선관위 국제개발협력 보조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보조금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뒤늦게나마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의 사업이 법규 및 지침의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국제기구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보조금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

1. 국제개발협력 보조금사업 신청 및 심사·선정절차
2.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
3. 보조금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처리절차 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위탁선거관리 사업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위탁선거관리 사업¹⁾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등에 근거하여, 정당 경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의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22억 200만원 중 41.5%에 해당하는 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2,202	2,202	2	△1,228	977	914	0	63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정당경선 관리	2,000	2,000	0	△1,170	831	786	-	45
위탁선거 관리	202	202	2	△58	146	128	-	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코드명: 일반회계 1131-306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 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15년 88.3%이었으나, 2016년에는 17.9%, 2017년에는 41.5%로 2년 연속 저조하였다. 이처럼 집행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집행실적 감소에도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예산액의 급증에 기인한다.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6억 2,500만원 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 예산액의 2배가 넘는 14억 6,1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2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3년간 위탁선거관리 사업예산의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625	625	0	△52	573	552	88.3	0	21
2016	1,461	1,461	0	0	1,461	261	17.9	2	1,198
2017	2,202	2,202	2	△1,228	977	914	41.5	0	6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영향으로 동 사업에서 공직자 후보자 추천 정당 경선 관리 총 401회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 경선 관리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정당 경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없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당 경선 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거 정당경선 3회, 조합장 선거 등 기타 위탁선거관리 72회를 실시하는 데 그쳤다.

[위탁선거관리 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정당경선 관리 401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경선 등) - 기타 위탁선거 관리 34회(조합장 선거 등)
2015	-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정당경선 관리 4회 (국회의원 재·보선) - 기타 위탁선거 관리 1,367회(조합장 선거 등)
2016	-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정당경선 관리 1회(국회의원선거 정당 경선) - 기타 위탁선거 관리 67회(조합장 선거 등)
2017	-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정당경선 관리 3회(대통령 선거 정당경선) - 기타 위탁선거 관리 72회(조합장 선거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투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현장 투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방식별 선거 지원 현황]

(단위: 건)

투표방식	2013	2014	2015	2016	2017
터치스크린	268	117	84	31	8
온라인	16	107	512	1,026	1,36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온라인투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투표소투표방식에 비해 투표안내문 발송 비용 및 투·개표소 설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수요와 온라인 투표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에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획실 등 기본경비 사업¹⁾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여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실 등 기본경비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130억 8,500만원 중 99.4%인 13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²⁾은 선거사무의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선거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 56억 1,800만원 중 97.8%인 54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실 등 기본경비 및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획실 등 기본경비	13,085	13,085	0	20	13,104	13,010	0	94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5,618	5,618	0	0	5,618	5,497	0	12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기획실 등 기본경비에서 정당한 전용절차 없이 타 사업에 편성된 ‘인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비용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111-250

2) 예산코드: 일반회계 7136-5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인사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던 선거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인사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기획실 등 기본경비 사업에서도 ‘인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인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선거관리위원회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 세부사업	계약명	예산액	집행액	수주업체
기획실 등 기본 경비	인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0	50	(주)인투데이터 시스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시스 템 유지·보수용역	100	80	(주)인투데이터 시스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서 서식이 타 기관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어 평정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기본경비에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정당한 전용절차도 없이 타 사업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외선거관리 사업¹⁾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와 재외선거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49억 2,300만원 중 69.9%인 104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로 인하여 조기 실시됨으로써 법정선거기간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²⁾

[2017회계연도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선거관리	14,923	14,923	0	△2,757	12,166	10,431	0	1,73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전산운영관련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5

2)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에서 1,000만원, 위법행위예방 활동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에서 3,400만원 등 각기 다른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다.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 세부사업	집행비목	집행액	계약기간
재외선거관리	일반용역비(210-14)	10	2017. 1. ~ 2017. 12.
위법행위예방활동	관리용역비(210-15)	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은 내용상 위법행위예방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와 재외선거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선거관리 사업에서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증거분석시스템³⁾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이며, 분리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위법행위예방활동과 재외선거관리에 각각의 시스템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210-15)의 적용범위는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이며, 일반용역비(210-14)의 적용범위는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 ※ 기존 증거분석 시스템

- 증거분석시스템 : 조직적 위법행위 단서 포착을 위한 게시물 간 연관성 분석
- 국내자동검색시스템 : 국내 사이트의 선거관련 게시물 검색
- 국외자동검색시스템 : 국외 사이트의 선거관련 게시물 검색

따라서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일부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고, 세목조정 등의 정당한 절차 없이 그대로 집행한 것은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방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22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억 2,900만원(116.4%)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1,056	0	0	2,285	2,285	1,229

자료: 소방청

2017회계연도 소방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3억 3,100만원(10.2%)이 감소한 1,61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67억 6,000만원(11.6%)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44,377	178,378	179,468	161,137	△18,331	16,760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23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9%인 22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2,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2,311	2,285	26	0	98.9

자료: 소방청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794억 6,800만원이며, 이 중 89.8%인 1,611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69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8,378	179,468	179,468	161,137	16,965	1,366	89.8

자료: 소방청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소방청의 자산은 2,549억 1,600만원, 부채는 2억 4,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546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억 200만원, 일반유형자산 2,509억 9,200만원, 무형자산 14억 5,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7억 6,700만원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9,7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5억 1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54,916	-	-	-
Ⅰ. 유동자산	702	-	-	-
Ⅱ. 투자자산	0	-	-	-
Ⅲ. 일반유형자산	250,992	-	-	-
Ⅳ. 사회기반시설	0	-	-	-
Ⅴ. 무형자산	1,455	-	-	-
Ⅵ. 기타비유동자산	1,767	-	-	-
부 채	248	-	-	-
Ⅰ. 유동부채	97	-	-	-
Ⅱ. 장기차입부채	0	-	-	-
Ⅲ. 장기충당부채	151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0	-	-	-
순 자 산	254,668	-	-	-
Ⅰ. 기본순자산	102,344	-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2,786	-	-	-
Ⅲ. 순자산 조정	19,538	-	-	-

자료: 소방청 (2017. 7. 26. 신설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는 없음)

소방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75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87억 600만원, 관리운영비 306억 4,800만원, 비배분비용 4억 800만원, 비배분수익 22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수익은 없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소방청 개청으로 전년도 재정운영순원가는 없으며, 2017년도 재정운영순원가는 475억 1,400만원이다. 이는 주로 소방정책지원으로 발생하였으며, 프로그램순원가는 187억 6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90억 9,700만원, 경비 115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인한 감가상각비용 3억 8,400만원이며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기타 비용 2,4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은 지출금 반납금과 과오지급금회수금 등 기타 수익 22억 3,300만원이며 기타사업수입으로 인한 재화 및 용역 제공수익 1,500만원에 기인한다.

총 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87억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8,706	-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18,706	-	-	-
나. 프로그램 수익	0	-	-	-
II. 관리운영비	30,648	-	-	-
III. 비배분비용	408	-	-	-
IV. 비배분수익	2,248	-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7,514	-	-	-
VI. 비교환수익 등	0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7,514	-	-	-

자료: 소방청 (2017. 7. 26. 신설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표는 없음)

소방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2,253억 2,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546억 6,800만원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293억 4,100만원(13.0%) 증가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의 소방정책지원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인한 비용 497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기타수익 등 22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내역으로 기초순자산대비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의 증가로 798억원 5,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의 증가로 22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순자산대비 자산재평가이익이 7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25,327	-	-	-
II. 재정운영결과	47,514	-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7,568	-	-	-
IV. 조정항목	△712	-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54,668	-	-	-

자료: 소방청 (2017. 7. 26. 신설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는 없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지원, ②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등 2가지 사업이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내 소방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2억원 → 3억원)되었다.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국가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예산이 3억원이 증액(18억원 → 21억원)되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 ② 대형 복합재난 등 대응역량 강화, ③ 고품격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④ 재난대비 소방장비 확충 및 관리개선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예비비의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예비비 사업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동 예비비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에 따른 기관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을 위해 9월에 배정되었으나, 예비비의 50% 이상이 이월집행되었다. 따라서 예비비 신청 시 배정시기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소방학교 공공요금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예산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집행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세목변경 등 예산조정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예산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 충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의료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비비 이월 과다

가. 현 황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¹⁾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이다. 소방청은 2017년 예산현액 75억 800만원 중 6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511	5,511	0	0	1,997	7,508	6,302	1,117	89
소방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0	0	0	0	1,997	1,997	906	1,049	42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소방청 개청에 따라 편성한 정보화 사업의 예비비의 이월액이 52.2%로 많아 예비비 사업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150-500

동 사업의 예비비 19억 9,700만원은 2017년 소방청 출범²⁾에 따른 것으로, 기관 대표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배정되었다. 그러나 예비비의 집행액은 9억 600만원으로, 배정된 예비비의 52.5%인 10억 4,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의 구축 개발비 6억 3,300만원이 전액 이월됨에 따라, 관련 장비구입비는 4,5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감리비는 집행되지 않았다. 행정정보망 등 장비 구입비는 8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다.

[예비비(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예비비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997	906.6	1,049	42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시스템 구축 개발	633	0	633	0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선행 업무 수행, 계약업무 및 구축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장비 구입	323	45	278	0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감리	20	0	17.5	2.5	
행정정보망 등 장비 구입	996	856	108	32	“위협관리시스템”을 별도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절차진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조달 수수료 등	25	5.6	12.5	7	조달계약 수수료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 부진에 관해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선행 업무(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할당 등) 및 계약 절차 수행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했으며, 특히 소방정보시스템의 경우 예비비 신청액 53억원 중 19억 9,700만원이 배정되고 33억원이 미반영되어 이에 따른 사업내용, 과업범위, 물량 등 사업내용 변동이 크므로 사업비 배정 시점에서 선행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舊)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개칭하였다.

다만, 당초 예비비 신청액(53억원)과 배정액(약 20억원) 간 차액(약 33억원)이 크게 발생했고, 소방청 개청시기(7월 26일)에 비해 예비비 배정시기(9월 26일)가 2달 지연되었다는 점은 예비비 신청 및 집행계획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집행지침³⁾ 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 50% 이상이 이월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예비비 신청 시 배정시기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p 142.

가. 현 황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¹⁾은 지자체 소방보조인력의 운영 보조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154억 5,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4억 5,3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5,459	15,459	0	0	0	15,459	15,453	0	6
지자체 경상보조	15,018	15,018	0	0	0	15,018	15,018	0	0
관리운영 등	441	441	0	0	0	441	435	0	6

자료: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과 각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의미하며, 2018년 6월 현재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은 총 1,013명, 사회복무요원은 총 1,422명이다.

나. 분석의견

의무소방원 복무점검을 위한 국내여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체계적인 복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2

동 사업 내 국내여비는 1,320만원으로, 의무소방원 복무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17년 월별 국내여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2월에 약 1,000만원이 집행되어 복무점검 출장이 연말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국내여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12월	계
집행액	353	1,006	234	188	50	76	10,243	12,150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체계적인 의무소방원 복무점검계획을 바탕으로 복무점검 실적을 관리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17년 중앙소방학교에서 집행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이하 “공공요금”)에 관한 사업은 중앙소방학교 기본경비 사업,¹⁾ 중앙소방학교 운영 사업,²⁾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사업³⁾ 등 3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본예산은 3억 7,400만원이나, 집행액은 6억 6,900만원이며, 부족분은 2억 9,6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2,300만원), 이·전용 등(2억 7,200만원)을 통해 충당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소방학교 소관 사업 내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소방학교 기본경비	231	231	23	31	285	285	0	0
중앙소방학교 운영	139	139	0	96	235	235	0	0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4	4	0	145	149	149	0	0
계	374	374	23	272	669	669	0	0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중앙소방학교 공공요금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예산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집행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7021-250

2) 코드명: 일반회계 1170-300

3) 코드명: 일반회계 1132-302

2017년 중앙소방학교 소관 사업 내 공공요금 예산은 총 3억 7,400만원이나 집행액은 6억 6,9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약 80%인 2억 9,500만원이 초과집행 되었다. 소방청은 세목변경 등 예산조정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예산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5~2017년 중앙소방학교 소관 사업별 공공요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중앙소방학교 기본경비	232	0	33	265	265	0	0
	중앙소방학교 지원	139	0	19	158	158	0	0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4	0	121	125	125	0	0
	계	371	0	52	423	423	0	0
2016	중앙소방학교 기본경비	232	0	63	295	272	23	0
	중앙소방학교 지원	139	0	58	197	196	0	1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4	0	137	141	140	0	1
	계	375	0	173	915	891	23	2
2017	중앙소방학교 기본경비	231	23	31	285	285	0	0
	중앙소방학교 운영	139	0	96	235	235	0	0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4	0	145	149	149	0	0
	계	374	23	272	669	669	0	0

자료: 소방청

이는 공공요금 소요에 비해 예산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히 집행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요금의 예산액은 8,200만원이나 2017년 집행액은 3억 2,200만원으로 약 4배에 달하며, 수도요금은 소방훈련수요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예산액보다는 초과되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5~2017년 중앙소방학교 주요 공공요금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15	2016	2017
전기요금	82,467	256,599	301,875	322,317
수도요금	67,177	116,771	92,833	78,652

주: 중앙소방학교 소관 공공요금은 2015~2017년 동일한 규모로 편성

자료: 소방청

둘째,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성격의 기본 경비 재원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세부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재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청은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의 감액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사업에서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조정된 예산은 1억 4,500만원인데, 이 중 1억 2,300만원은 소방보조인력의 피복비와 급량비에서 마련된 것이다.

[소방보조인력 공공요금 예산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으로	
세목	금액	세목	금액
일반수용비(210-01목)	14	공공요금(210-02목)	145
피복비(210-03목)	57		
급량비(210-04목)	66		
임차료(210-07목)	5		
시설장비유지비(210-07목)	3		

자료: 소방청

피복비와 급량비의 예산조정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조정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복비와 급량비는 2015년 9,700만원, 2016년 1억 1,500만원이 감액조정된

바 있다.⁴⁾ 그러나 동 예산조정은 소방보조인력에게 지원되는 피복과 급량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경상적인 공공요금을 3개의 사업에서 구분없이 집행하고 있는데, 특히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사업은 경상적인 공공요금이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사업 내 조정을 통한 공공요금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상적인 공공요금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4) 피복비는 2015~2017년 3억 6,7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급량비는 2015~2016년 2억 1,900만원, 2017년 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가. 현 황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제10조의2¹⁾에 따라 소방청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서 관련 예산은 구급정보통합 운영관리 사업²⁾과 119구조구급국 기본경비 사업³⁾에 편성되어 있다.⁴⁾ 소방청은 구급정보통합 운영관리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4,3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119구조구급국 기본경비의 2017년 예산현액 4억 3,4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구급정보통합 운영관리	43	43	0	0	43	20	0	23
119구조구급국 기본경비	434	434	0	6	440	429	0	11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2) 코드명: 일반회계 1132-301

3) 코드명: 일반회계 7011-255

4) 구급정보통합 운영관리 사업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119구조구급국 기본경비 사업에는 기타 경상적 운영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소방본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 충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 등의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의2⁵⁾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현재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현원 현황(2018년 7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소방직공무원		7	7
의료인력	임기제 5급(전문의)	4	1
	간호 7급	1	0
계		12	8

자료: 소방청

특히 임기제 5급의 경우, 직제가 시행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차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채용된 바는 없었으며, 6차 채용에서 1명이 임용되어 2018년 8월 현재 1명의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무사무관(전문의) 채용 경과]

횟수	채용시기(원서접수)	채용결과
제1차	2017. 4.	응시없음
제2차	2017. 5.	응시없음
제3차	2017. 9.	1명 응시(면접포기)
제4차	2018. 1.	1명 응시(면접탈락)
제5차	2018. 2.	응시없음
제6차	2018. 5.	1명 임용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라 동 센터의 소관업무인 재외국민과 원양선원에 대한 응급의료지도·상담 업무는 서울소방본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수행되고 있다.⁶⁾

따라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을 서둘러 충원할 필요가 있는데, 소방청은 의료인력의 직급과 연봉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서울대병원과의 인사교류⁷⁾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력의 자격요건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방청은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보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의 자격요건을 고수할 경우 장기간의 결원 또는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련의나 일반의 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채용된 의료인력에 대해 전문의료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서울 및 부산 소방본부 의료기관과의 의료지도 협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7)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 11. pp.214)에 따르면 2016년 의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약 1,300만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 5호의 연봉 범위는 약 4,400~7,800만원이다. 다만, 동 연봉에는 가족수당,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가. 현 황

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사업¹⁾은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2개 119특수구조대(충청강원대, 호남대)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638억 8,300만원 중 76.4%인 48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9억 9,000만원을 이월하고,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19특수구조대지원 (충청강원대, 호남대)	63,216	63,216	667	0	63,883	48,803	14,990	90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31,470	31,470	550	0	32,020	18,112	13,907	0
충청강원대 건립	20,200	20,200	331	0	20,668	14,583	6,085	0
호남대 건립	11,270	11,270	219	0	11,352	3,529	7,823	0

자료: 소방청

119특수구조대는 2014년 11월 舊)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특수재난사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119특수구조대는 2017년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4년 11월 수도권 및 영남, 2015년 12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가 발대하였다. 현재 호남 119특수구조대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현재 별도 청사 없이 호남대는 이양면 복지회관, 충청강원대는 중앙소방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171-303

나. 분석의견

첫째,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에 편성된 공사비가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이하 “충청강원대”)와 호남 119특수구조대(이하 “호남대”) 신축사업비는 총 31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20억 2,000만원이다. 이 중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공사비로 편성된 113억 2,700만원과 호남대 하천성토비를 위해 전용한 17억 3,500만원 등 총 130억 6,1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그 외 감리비 8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이월되어 전체 이월액은 139억 700만원이다.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6	건설보상비	1,356	0	0	1,356	1,356	0
	기본조사설계비	221	0	0	221	0	221
	실시설계비	329	0	0	329	0	329
	계	1,906	0	0	1,906	1,356	550
2017	건설보상비	18,044	0	△1,906	16,138	16,138	0
	기본조사설계비	492	221	171	884	884	0
	실시설계비	740	329	0	1,069	1,069	0
	공사비	11,327	0	1,735	13,062	0	13,061
	감리비	838	0	0	838	0	838
	시설부대비	29	0	0	29	21	8
	계	31,470	550	0	32,020	18,112	13,907

자료: 소방청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청사 부지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호남대의 부지는 장성군에서 화순군으로, 충청강원대는 청주시에서 충주시로 각각 신청사부지가 변경²⁾되었다. 이에 따라 설계용역, 시공 등 사후절차가 지연되었는데, 당

2) 호남대의 부지는 당초 장성군 소재 새마을연수원 부지가 선정(2015. 11.)되었으나, 국유지 교환요청과 관련된 부지협약이 결렬되어 화순군으로 부지가 변경(2016. 8.)되었으며, 충청강원대는 청주시 오창읍을 부지후보지로 선정(2015. 10.)하여 건설보상비 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

초 청사신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 충청·강원대의 설계는 2017년 6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실제 설계용역은 2017년 10월(호남대), 11월(충청·강원대)에 완료되었으며, 착공시기는 2017년 7월에서 2018년 1월로 순연되었다.

[호남,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청사신축 계획 및 변경사항]

사업명		호남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수용시설		본관, 항공대, 종합훈련타워, 인명구조견 훈련센터	
사업비		279억원	362억원
부지규모		부지 107,130㎡ / 연면적 5,965.4㎡	부지 112,575㎡ / 연면적 5,736.49㎡
계획 및 변경	부지선정	장성(2015. 11.) → 화순(2016. 8.)	오창(2015. 10.) → 충주(2015. 11.) ※부지매입비 증액 협의(2016. 7.)
	설계	당초계획)2016. 10. ~ 2017. 6. → 2016. 12. ~ 2017. 10~11.	
	공사	당초계획)2017. 7. ~ 2019. 10.(28개월) → 2018. 1. ~ 2019. 10.(22개월)	

자료: 소방청

한편,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순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시기는 2019년 10월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보상비를 공사비로 전용한 후 이월한 것은 국회 심사 없이 차년도 공사비를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조정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건설보상비(410-00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9억 600만원³⁾ 중 17억 3,500만원을 호남대 부지의 성토⁴⁾를 위한 공사비(420-03목)로 전용하였다. 그러나 청사 착공이 2018년 1월에 실시됨에 따라 전용된 공사비는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전용 등의 예산조정은 당해연도 내에 확정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조정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유로 충주시로 변경(2015. 11.)하여 부지매입비가 58억원 증가함에 따라 예산당국 협의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2016. 8.)되었다.

3) 집행잔액 중 1억 7,100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4) 화순군에 위치한 호남대 부지는 농지였던 관계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성토(盛土) 작업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 전용은 2017년 2월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설계용역 계약이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일부 이월은 예측이 가능했으므로 동 전용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월은 차년도 예산 요구안을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건설보상비 집행잔액을 전용하기보다는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남대 공사비 증액에 관한 국회심사를 거치는 방안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소방용품 및 방염물품에 대한 인증 및 검사, 위험물시설 안전성능시험 및 검사, 소방장비 검사·점검 및 사용자 교육, 소방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보조금 지원 없이 법률에 따른 위탁·독점적인 인증 및 검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수입 예산액은 613억 5,700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719억 4,400만원으로 105억 8,7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소방용품시험검사 수입이 74억 8,500만원, KFI인정시험검사 수입이 11억 2,500만원, 의뢰시험이 9억 2,6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2017년 지출은 자본예산 89억 7,600만원,²⁾ 인건비 135억 8,400만원, 경비 343억 2,400만원, 예비비 3억 9,600만원, 이월금 등 146억 6,400만원이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자본 지출 내역은 건물 20억 4,600만원, 시설장치 20억 5,700만원, 과학기자재 10억 9,500만원, 차량 운반구 18억 900만원, 소프트웨어 9억 3,200만원 등이다.

[2017회계연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년 예산 (A)	2017년 결산 (B)	증 감(B-A)	
					금 액	증감율
수입	합 계		61,357	71,944	10,587	17.3
	주요사업	소 계	32,109	42,488	10,379	32.3
		소방용품시험검사 ¹⁾	22,109	29,594	7,485	33.9
		KFI인정시험검사	1,248	2,373	1,125	90.1
		의뢰시험	1,434	2,360	926	64.6
		위험물탱크검사 등 ²⁾	4,996	5,178	182	3.6
		위탁수수료 ¹⁾	673	520	△153	△22.7
		소방장비검사검수 ³⁾	1,649	2,463	814	49.4
		소 계	17,753	17,595	△158	△0.9
	기타사업	공간안전인증평가	190	81	△109	△57.4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³⁾	0	182	182	-
		기자재사용료	148	151	3	2.0
		국가R&D등 수탁연구용역	16,727	16,559	△168	△1.0
		UL 및 FM심사료	57	68	11	19.3
		재발급 수수료등	470	394	△76	△16.2
		전문교육	160	161	1	0.6
	사업외수입	소 계	671	1,036	365	54.4
		정부지원금	50	66	16	32.0
		이자수입	621	689	68	11.0
		잡수입	0	281	281	-
	이월금	이월금	10,825	10,825	0	0.0
지출	합계		61,357	71,944	10,587	17.3
	자본예산		9,566	8,976	△590	△6.2
	인건비		15,167	13,584	△1,583	△10.4
	경비		35,427	34,324	△1,103	△3.1
	예비비		1,198	396	△802	△66.9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0	14,664	14,664	-

주: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3)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2조, 제23조, 제26조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1. 인증·검사 수수료를 적정성 검토와 현금성 금융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2013년 사업수익은 358억 2,700만원에서 2017년 606억 5,100만원으로 248억 2,400만원(연평균 14.1%)이 증가하였다. 사업비용은 2013년 294억 9,900만원에서 2017년 437억 4,600만원으로 142억 4,700만원(연평균 10.4%)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2013년 58억 4,400만원에서 2017년 137억 4,300만원으로 78억 9,900만원(연평균 23.8%)이 증가하고, 2013~2017년 평균 매출액순이익률도 20.3%에 달하고 있다.³⁾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BA)	연평균 증가율
수익	사업수익	35,827	41,248	51,088	57,937	60,651	24,824	14.1
	- 사업수익	25,715	29,824	32,840	36,866	41,340	15,625	12.6
	- 기타사업수익	10,112	11,424	18,248	21,071	19,311	9,199	17.6
	사업외수익	980	799	721	761	935	△45	△1.2
	수익합계	36,807	42,047	51,809	58,698	61,586	24,779	13.7
비용	사업비용	29,499	31,003	39,051	42,246	43,746	14,247	10.4
	- 인건비	10,416	10,511	11,706	12,262	14,053	3,637	7.8
	- 경비	19,083	20,492	27,345	29,984	29,693	10,610	11.7
	사업외비용	1,364	2,599	2,670	3,131	3,897	2,533	30.0
	비용합계	30,863	33,602	41,721	45,377	47,643	16,780	11.5
당기순이익		5,844	8,345	9,967	13,162	13,743	7,899	23.8
매출액순이익률		16.3	20.2	19.5	22.7	22.7	6.4	20.3

주: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사업수익)이며, 표의 20.3%는 2013~2017년 단순평균치임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대비 검사물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기술원 정원은 31.5% 증가하는데 그쳤고, 인당 검사물량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연도별 1인당처리물량]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인당처리물량(만개)	38	43	41	52	61
증가율(%)	-	13.1	-4.6	26.8	17.3

나. 분석의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유자금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독점적인 인증·시험검사 위탁사업의 적정 수수료율을 검토하는 한편, 현금성 금융자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현금을 포함한 금융성자산 보유 규모가 2013년 214억 8,200만원에서 2017년 517억 9,100만원으로 30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금융성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B-A)
현금 및 현금성자산	2,698	4,658	11,061	14,935	11,366	8,668
단기금융상품	22,972	27,502	32,964	43,466	51,464	28,49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0	196	154	290	432	262
유동비금융자산	94	80	117	93	355	261
소계(a)	25,934	32,436	44,296	58,784	63,617	37,683
유동부채(b)	4,452	5,403	10,038	11,170	11,826	7,374
금융성자산(a-b)	21,482	27,033	34,258	47,614	51,791	30,309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지진 및 대형재난 사고 증가에 따른 국가안전점검 강화에 따라 소방용품, 위험물시설, 소방장비 등의 인증 및 검사 사업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연례적인 기관의 수익 증가와 높은 순이익률을 고려할 때 독점적인 인증·시험검사 수수료⁵⁾가 불필요하게 과다책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 사고에 따른 국가안전점검 강화, 2016년 건설(동탄, 하남 등 2기신도시)경기 부양과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도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16. 1. 27, 시행 2017. 1. 28.)에 따른 노후소화기 초기 교체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 건설경기 안정화 정부정책 기조 및 기존 노후 소방용품 교체에 따른 검인증 물량 증가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관련 수수료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2호, 2017. 12. 2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에 근거하여 책정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별 주요 계량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소방기기검정	수량	61,349,430	74,908,117	77,138,633	104,780,550	130,761,594
	금액	16,689	20,482	23,015	26,588	29,593
KFI인정시험검사	수량	1,473,718	643,993	1,090,936	1,013,110	2,103,950
	금액	997	1,416	2,045	1,681	2,373
의뢰시험	수량	12,549	26,606	11,852	2,654	11,337
	금액	1,239	1,433	1,405	1,463	1,968
우수품질인증	수량	1	0	0	0	0
	금액	2	0	0	0	0
위험물탱크검사 등	수량	11,685	12,600	15,498	16,462	16,699
	금액	6,222	5,319	5,698	5,948	5,569
위탁수수료	수량	672	1,122	985	965	1,045
	금액	310	297	431	510	521
소방장비검사검수	수량	958	1,356	1,237	1,588	1,547
	금액	973	1,134	1,259	2,325	2,463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속적으로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2017년 기준으로 수입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103억 7,900 만원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입 예산을 과소편성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수입 예산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지출 예산도 과소 편성하면서 그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금융성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요 인증·시험사업 수입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합계	21,371	26,429	5,058	21,520	30,078	8,559	25,279	33,853	8,575	30,744	38,517	7,773	32,109	42,488	10,379
소방용품시험검사	12,353	16,637	4,284	13,639	20,482	6,843	15,385	23,015	7,630	21,051	26,588	5,537	22,109	29,594	7,485
KFI인정시험검사	1,094	997	△97	1,195	1,415	220	1,398	2,045	647	1,114	1,682	568	1,248	2,373	1,125
의뢰시험	1,211	1,238	27	1,318	1,754	436	1,479	1,721	242	1,495	1,845	350	1,434	2,360	926
위험물탱크검사등	5,523	6,222	699	4,169	4,997	828	5,284	5,381	97	5,198	5,567	369	4,996	5,178	181
위탁수수료	327	311	△16	313	297	△16	470	432	△38	627	511	△116	673	520	△152
소방장비검사	863	1,024	161	886	1,134	248	1,263	1,259	△4	1,259	2,325	1,066	1,649	2,463	814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현 청사의 사무공간 및 시험·연구시설이 부족하여, 소방청 승인(2018. 3. 5.)을 거쳐 충북 오송에 제3청사 건설을 위한 토지(76,290㎡) 구입 비용(255.7억원)으로 금융성 자산 일부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제3청사 건축비 723억원, 시험설비 구축비 50억원, 인력 증원 인건비 176억원 등 총 9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융성 자산은 이를 대비한 재원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구입 비용은 2018~2023년까지 6년간 분할 납부할 예정이고, 그동안 적립될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금융성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원이 보유한 금융성 자산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효과적인 홍보비 집행 필요

가. 현 황

2015~2017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경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탁연구용역비⁶⁾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고선전비⁷⁾로 2015년 6억 1,000만원, 2016년 6억 3,800만원, 2017년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다.

6)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7) 광고선전비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언론홍보, 사회 공헌활동, 각종 후원 등에 지출되고 있다.

[2015~2017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A)	2016년	2017년(B)	증감(B-A)
경비	36,356	33,902	34,324	△2,032
수탁연구용역비	22,402	18,987	16,991	△5,411
세금과 공과금	2,962	3,364	3,710	748
감가상각비	2,466	2,571	2,962	496
지급수수료	1,709	1,854	2,284	575
복리후생비	1,178	1,260	1,344	166
여비교통비	887	857	971	84
도서인쇄비	689	763	910	221
광고선전비	610	638	731	121
연구개발비	0	0	623	623
외부위탁수수료	471	558	572	101
공공요금	441	450	471	30
임 차 료	349	385	425	76
행 사 비	303	342	365	62
교육훈련비	183	202	341	158
회 의 비	420	358	327	△93
수선유지비	366	390	323	△43
차량유지비	273	258	290	17
재 료 비	305	284	265	△40
사내복지기금	120	160	200	80
소모품비	121	142	149	28
연 료 비	67	65	61	△6
기타경비	12	9	8	△4
업무추진비	22	5	1	△21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관 홍보비가 단순한 기관 이미지, 행사비 협찬 등으로 집행되고 있어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광고선전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기적으로 다수의 소방분야 언론사(총 16개사)에게 홈페이지 배너광고 및 지면광고 등을 의뢰하였다. 이에 2017년 기관 홍보비로 지면광고에 10개사 5,900만원,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6개사 5,2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언론사 지면 광고와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내용은 단순한 기관명 홍보나 기관의 미션 및 비전 등 브랜드 이미지 홍보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언론사 홍보비 지출현황]

(단위: 건, 백만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지면광고		합계	
	지출 건수	금액	지출 건수	금액	지출 건수	금액
1월	0	0	13	13	13	13
2월	6	6	1	1	7	7
3월	7	7	2	2	9	9
4월	6	6	3	3	9	9
5월	8	8	11	17	19	25
6월	7	7	2	2	9	9
7월	4	4	5	5	9	9
8월	3	3	2	2	5	5
9월	4	4	7	7	11	11
10월	3	3	3	3	6	6
11월	4	4	4	4	8	8
12월	5	5	4	10	9	15
합계	52	52	53	59	105	111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고유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지원,⁸⁾ 축구대회, 동요대회 등 소방관련 행사 등에 후원 비용으로 2017년에만 약 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사 후원금 지출 사례]

(단위: 원)

일시	지출내역	집행액
2017/06/07	2017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지원	20,000,000
2017/06/29	제11회 전국소방인 축구대회 후원물품 구입비용	6,640,000
2017/10/16	제18회 전국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후원금	10,000,000
2017/12/13	2017년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후원금(시상금)	2,500,000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지원 사업은 소방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체제가 미흡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소방용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개발도상국 소방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단순한 기관 이미지 홍보를 지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비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황수환 예산분석관
정주완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88-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